학교법인 중부학원 및 중부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1.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21. 4. 5. ~ 4. 16. [10일간, 토·일요일 제외]

• 감사인원 : 22명(공인회계사 포함)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유형별 지적건수

구 분	법인 운영· 재산관리	조직 인사·복무	예산·희계	산단· 연구비	입시·학사	시설·물품	계
지적사항	5	13	11	10	8	5	52

나. 세부지적 및 처분: "감사결과 처분서" 참고

감사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실명이 공개된 모든 학교(기관)가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관명: 학교법인중부학원, 중부대학교

연번 핤 지 젘 사 처 분(안) 수익용기본재산 재산세 등 교비회계 집행 1 【학교법인 중부학원】 ○ 「사립학교법」제29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ㅇ경고(1명)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는 다른 회계에 전출 ㅇ시정 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 - 교비회계에서 집 회계 규칙 시4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행한 수익용기본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그 설립 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402,792,362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원을 법인회계에 기본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되며, 「지방세 서 교비회계로 전출 하기 바람 특례제한법 : 제41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 중부대학교 】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 경징계(2명)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 경고(4명)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2015년 교육부 회계부분감사에서 ○ 통보(문책 2명) '수익용기본재산 재산세 교비회계 지급 등 부적정'으로 신분상 처분(경고 9명)과 시정(교비회계 지급된 수익용기본 <별도조치> 재산 부과 재산세 40,293,537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 ㅇ고박 조치를 받았음에도, - 학교법인 중부학원과 중부대학교는 법인 수익용기본 재산인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토지(57,764㎡)에 부과된 2016년 재산세 8,669,818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붙임】"수익용기본재산 부과 재산세 등 교비회계 집행 현황"과 같이 2016년부터 2021.4. 감사일 현재 까지 위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토지 등 수익용기본재산(토지)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14필지에 부관된 재산세 등 합계 402,792,362원(세금	
	355,240,062원, 감정평가수수료 47,552,3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수익용기본재산 부과 재산세 등 교비회계 집행 현황

□ 세금 납부

(단위 : 원)

		2.2		과세		세금	납부
연도	소재지	지번	지번 지목 면적 취득 Q (m²)	취득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경기도 고양시	-	임야	57,764	2013-05-30	8,669,818	21,371,478
	충청남도 금산군	-	임야	1,029,233	1984-03-22	1,375,480	2,836,806
2016	경기도 여주시	-	임야	128,791	1993-08-11	7,539,450	
	충청남도 태안군	-	염전	44,980	1983-04-28	763,210	
		소	.계			42,556	5,243
	경기도 고양시	-	임야	57,764	2013-05-30	10,662,090	21,920,147
	충청남도 금산군	-	임야	1,029,233	1984-03-22	1,177,660	2,981,897
2017	경기도 여주시	-	임야	128,791	1993-08-11	7,862,129	
	충청남도 태안군	-	염전	44,980	1983-04-28	770,770	
		소	45,374,693				
	경기도 고양시	-	임야	57,764	2013-05-30	10,191,096	34,023,057
	충청남도 금산군	-	임야	1,029,233	1984-03-22	1,309,693	3,210,722
2018	경기도 여주시	-	임야	128,791	1993-08-11	8,278,099	
	충청남도 태안군	-	염전	44,980	1983-04-28	823,660	
		소	57,836	5,327			
	경기도 고양시	-	임야	57,764	2013-05-30	10,584,179	65,895,851
	충청남도 금산군	-	임야	1,029,233	1984-03-22	1,392,022	4,640,626
2019	경기도 여주시	-	임야	128,791	1993-08-11	8,402,733	
	충청남도 태안군	-	염전	44,980	1983-04-28	1,235,500	

		지번 7	1.7	과세	취득일	세금 납부	
연도	소재지		지목	면적 (m²)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계 92,150,912						0,912
	경기도 고양시	-	임야	57,764	2013-05-30	10,698,816	88,302,905
	충청남도 금산군	-	임야	1,029,233	1984-03-22	1,587,474	6,723,261
2020	경기도 여주시	-	임야	128,791	1993-08-11	8,649,251	
	충청남도 태안군	-	염전	44,980	1983-04-28	1,360,180	
		소	117,32	21,888			
		합계				355,24	10,062

□ 감정평가 수수료 납부

(단위 : 원)

연번	소재지	지번	대상 면적	감정평가업체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기안 (집행일)	
1	충청남도 금산군	산86	-	-	5,096,300*	′18. 9. 2. (′18. 9. 7.)	
2	경기도 고양시	613-10	76,042 m² (교육용 18,278.7 m²) (수익용 57,764.2 m²)	-	7,520,000**	′20.3.30. (′20. 4. 7.)	
	경기도 여주시		171,722 m²		9,900,000	′20. 3. 30. (′20. 4. 7.)	
3		산 29		171,722 m²	-	12,926,100	'20. 9. 8. ('20. 9. 14.)
				-	12,109,900	′20. 9. 8. (′20. 9. 14.)	
	합계				47,552,300		

- * 학교법인에서 대학으로 납부 요청 : 기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평가수수료 납부 요청(중법 2018-117호, 2018.9.2.)
- ** 총 면적(76,042.9㎡)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9,900,000원 중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되는 면적 (57,764.2㎡)에 해당 금액

기관명 : 학교법인 중부학원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부적정 ○ 「법인세법」제24조 및「소득세법」제34조에 따르면 ○경고(2명) 기부금 중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학교법인 등의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중부학원은 2019. 12. 19. A이 학교법인에 법인발전기금으로 기부한 137,000천원에 대해 법정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현황"과 같이 2017.12.부터 2021. 2.까지 위 A 등이 학교법인발전기금으로 기탁한 기부금 합계 2,764,274천원에 대해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부적정 이 「법인세법」제24조 및「소득세법」제34조에 따르면 기부금 중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학교법인 등의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중부학원은 2019.12.19. A이 학교법인에 법인발전기금으로 기부한 137,000천원에 대해 법정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붙임】"지정기부 법정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현황"과 같이 2017.12.부터 2021. 2.까지 위 A 등이 학교법인발전기금으로 기탁한 기부금 합계 2,764,274천원에 대해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 경고(2명) <별도조치>

지정기부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현황

(단위 : 천원)

		지정기부금	내역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행
연번	기부자	세입 처리일	기부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	발행일	발행액
1	A	2019-12-19	-	137,000	2019-12-19	137,000
2	A	2020-03-30	-	129,000	2020-03-30	129,000
3	A	2021-02-18	-	58,000	2021-02-18	58,000
4	A	2020-08-11	-	32,000	2020-08-11	32,000
5	A	2020-12-18	-	30,000	2020-12-18	30,000
6	A	2019-03-26	-	29,000	2019-03-26	29,000
7	A	2018-03-30	-	28,000	2018-03-30	28,000
8	A	2018-09-27	-	28,000	2018-09-27	28,000
9	A	2018-06-29	-	27,000	2018-06-29	27,000
10	A	2020-02-27	-	26,000	2020-02-27	26,000
11	A	2018-07-12	-	25,700	2018-07-12	25,700
12	A	2019-06-27	-	24,000	2019-06-27	24,000
13	A	2018-12-20	-	23,000	2018-12-20	23,000
14	A	2019-09-26	-	23,000	2019-09-26	23,000
15	A	2018-08-08	-	22,000	2018-08-08	22,000
		<u> </u>	<중 략	>		
240	-	2018-12-24	-	110	2018-12-24	110
241	-	2019-01-25	-	17	2019-01-25	17
242	-	2018-11-23	-	310	2018-11-23	310
243	-	2018-12-24	-	116	2018-12-24	116
244	-	2019-01-25	-	58	2019-01-25	58
245	-	2019-02-25	-	58	2019-02-25	58
246	-	2019-12-26	-	2,000	2019-12-26	2,000
247	-	2018-11-23	-	509	2018-11-23	509
248	-	2018-12-24	-	127	2018-12-24	127
249	-	2019-01-25	-	64	2019-01-25	64
250	-	2019-02-25	-	64	2019-02-25	64
		 합계	1	-		2,764,274

기관명 : 학교법인 중부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3	교육용기본재산 개발 계약 체결 부적정 ○ 「사립학교법」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민법」제61조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ㅇ 경고(1명)
	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제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학교법인 중부학원 A은 2013. 2. 12. 이사회에 '수익용 토지의 주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이건 사업개발부지에 교육용기본재산인경기도 여주시 소재 토지의 전체 면적 50,479㎡(매입금액32억원) 중 4,226㎡(매입금액2억 6,789만원 상당)가 포함되어있음에도 동 토지가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함을전제로 안건을 보고하였고, 이사회가 동 안건을 가결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한 다음, 같은 날 ○○와 위경기도 여주시 소재 토지 4,226㎡ 등이 포함된 여주시소재 토지 101,526㎡를 주택부지로 개발하는 '여주 그주택개발 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학교법인이 ○○에게 경기도 여주시 부지를 제공하고, ○○가 주택등을 시공하는 계약으로, 학교법인은 2016.5.16. ○○가 계약 사항을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명목을 들어 계약해지 통보	

기관명 : 학교법인 중부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4	이사회 허위 개최	
	○「사립학교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에	<고등교육정책실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는	별도조치 예정 대상>(9명)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 통보(문책_1명)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의	ㅇ경고(1명)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같은 법」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민법」제61조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며,「사립학교법」제17조 및「학교법인 운영(임원	
	/정관)업무 자료집(교육부)」에 따르면 이사장은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밝혀 반드시 재적이사 전원에게 통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며, 소집	
	통지서에는 이사회 개최시기, 개최장소 뿐만 아니라	
	회의목적(회의안건)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르면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이사회는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표결 수 등의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연번	이사회 안건 총 55건을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 감사 대상기간인 2018.3.부터 2021.4.까지 작성된 회의록에 따르면 총 47차례 이사회가 개최되었다고 작성되었으나, 2018.3.부터 2019.11.까지 개최되었다고 작성된 28차례 이사회회의록은 위 B 전임자인 H이 처리 - 덧붙여, 위 2019.12.부터 2021.3.까지 학교법인 허위 이사회 개최 19차례를 포함하여 【붙임2】"이사회 소집	처 분 (안)
	등기우편 미통지 현황"과 같이 2018. 3.부터 2021. 3.까지 총 47차례 학교법인 이사회 개최와 관련하여이사회 개최일·장소·회의목적(안건) 등이 기재된 이사회소집통지서를 재적이사 전원에게 통지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학교법인 중부학원은 이사회 개최 통지를 전화 또는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음을 주장하나,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통화기록(담당자, 법인서울사무소)에 이사회 통지 관련 내역이 확인되지아니하고 그 외 이사회소집 통지를 입증하지 못함	

【붙임】

이사회 허위 개최(회의록 허위 작성 안건 처리) 현황

연	회의록	충리	일시	الح الا	출석여부	임의결정
번	작성일	회차	장소	안건	출석(서명)	불출석
1	2019-12-26	2019-	2019-12-30 (17:30)	1. 교원 재임용 제청에 관한 심의·의결 · 2. 교원 계약만료 제청에 관한 심의·의결	A, C, D, E, F	
1	(22:35)	14차	이사장실 (서울)	3. 교원면직(정년퇴직) 보고	A, C, D, E, F	7, 7, 7, 7, 7
2	일자	2019-	2020-02-13 (17:30)	1. 교육용기본재산 매각에 관한 심의·의결 2. 2019회계연도 법인일반회계 및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3. 2020회계연도 법인일반회계 및 교비회계, 학교기업회계본예산(안) 심의·의결	A, C, E, -, F,	-, -, D
2	미상일*	15차	이사장실 (서울)	4. 2020년 일학습병행듀얼 공동훈련센터 지원금 이행보증보험 가입 심의·의결 5. 비전임교원 임면(재임용, 신규임용, 계약 만료, 의원면직, 휴직)	7-	-, -, D
3	2020-02-26	2019-	2020-02-28 (17:30)	1. 교원 신규임용 제청에 관한 심의·의결	A C D E E	
3	(09:05)	16차	이사장실 (서울)	2. 교원면직(사망퇴직, 의원면직) 보고	A, C, D, E, F	7777
				<중 략>		
18	일자	2021-	2021-03-12 (17:30)	1. 교원 임면(신규임용, 재임용, 복직)에 관한 심의·의결	A, C, D, -, F	E, -, -, -, -
10	미상일*	2차	이사장실 (서울)	2. 교원임면(의원면직) 보고	$D_i \subseteq D_i \stackrel{\bullet}{\rightarrow} \Gamma$	14 7, 7, 7, 7
19	2021-03-29 (09:37)	2021- 3차	2021-03-31 (17:30) 이사장실 (서울)	1. 교원 임면(승진임용, 직군전환, 신규임용)에 관한 심의·의결 2. 2020회계 교육용자산(보통자산 : 기자재, 비품) 불용 처리에 관한 심의·의결	A, C, E, F, -, -	-, -, D, -

^{*} 이사회 개최 전 일자 미상일에 회의록 작성

【붙임2】

이사회 소집 등기우편 미통지 현황

연번	회차	회의록 상 회의일시	안 건				
- 한번 	~~~	회의록 상 회의장소	친 신				
	2018	2018-03-19	1. 2018년 3월 교원 신규임용 제청에 관한 심의·의결 2. 2018년 3월 1일 전임교원 재계약 제청에 관한 심의·의결				
	-1차 이사장실(서울)		3. 전임교원면직(의원면직) 보고				
2	2018	2018-03-29	1. 2018년 4월 1일 교원 승진임용에 관한 심의·의결				
	<i>-</i> 2차	이사장실(서울)	2. 2017회계연도 고정자산(물품) 불용 처리에 관한 심의·의결				
3	2018	2018-05-03	1. 교원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심의·의결				
	-3차	이사장실(서울)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심의·의결 전임교원면직(의원면직) 보고 				
1	2018	2018-05-28	1. 2017회계연도 법인일반회계, 중부대학교 교비회계 및 학교				
4	-4차	이사장실(서울)	기업회계 결산에 관한 심의·의결				
5	2018	2018-06-28	1. 2018년 9월 1일 전임교원 재임용 및 재계약에 관한 심의·의결 2. 교육용보통재산(차량) 노후화에 따른 처분 심의·의결				
	<i>-</i> 5차	이사장실(서울)	3. 전임교원 정년퇴직 보고				
6	2018-	2018-08-14	1. 2018년 9월 교원 신규임용 제청에 관한 심의·의결 2. 전임교원면직(의원면직) 보고				
	6차	이사장실(서울)	3. 중부대학교총장 임용에 관한 심의·의결				
7	2018-	2018-08-30	1.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에 관한 심의·의결				
7	7차	이사장실(서울)	2. 전임교원면직(의원면직) 보고				
8	2018-	2018-09-27	1. 법인임원(개방형감사) 선임에 관한 심의·의결				
	8차	이사장실(서울)	2. 2018년 10월 1일 교원 승진 임용에 관한 심의·의결				
			<중 략>				
46	2021-	2021-03-12	1. 교원 임면(신규임용, 재임용, 복직)에 관한 심의·의결				
40	2차	이사장실(서울)	2. 교원임면(의원면직) 보고				
47	2021-	2021-03-31	1. 교원 임면(승진임용, 직군전환, 신규임용)에 관한 심의 의결				
4/	3차	이사장실(서울)	2. 2020회계 교육용자산(보통자산 : 기자재, 비품) 불용 처리에 관한 심의·의결				

기관명 : 학교법인 중부학원, 중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안)
5	대학직원 법인업무 처리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르면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학교법인 중부학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고,「학교법인	○ 경고(1명)
	중부학원 정관」제84조에 따르면 법인의 업무를 처리를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법인의 정원은 일반직 8명,	
	기능직 4명 등 정원 총 12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도,	○ 경고(2명)
	- 학교법인 중부학원 및 중부대학교는 2018회계연도부터	
	2021.4. 감사일 현재까지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관에 의한 법인의 직원을 두지 않고 겸직 근거도	
	없이 H과 B을 회계 등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기관명 : 학교법인 중부학원, 중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6	A 사전 면접 및 I 면접심사 부당	
	○「사립학교법」제2조 및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임용"	
	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	[학교법인 중부학원]
	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하고, 각급	○ 경고(1명)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	【중부대학교】
	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해당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경징계(1명)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립	3 3 11 (2 3)
	학교법」제5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교육공무원법」	o 통보
	제11조의3 제1항은'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 총장 제청권 행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전 단계에서
	중부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채용	이사장 면담 등을 진행하지 않도록
	과정을 1단계 서류 및 기초심사, 2단계 전공심사, 3단계	조치하기 바람
	공개강의 및 1차 면접, 4단계 최종 면접심사로 구성하고,	
	면접의 심사내용은 ① 교육자로서의 인성 및 성품 ②	
	교육신념 및 철학 ③교육자로서의 태도 ④교육자로서의	
	잠재능력 ⑤ 학생지도능력 ⑥ 학생 취업에 대한 적극성	
	⑦ 대학발전을 위한 공헌가능성 ⑧ 대학구성원간의 화합	
	및 소통능력 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도,	
	- I(A의 자)은 2020.1. 중순 경 2020.1학기 1차 교원채용을	
	위한 4단계 최종면접을 실시하면서 J의 면접심사표에	
	심사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면접당일 심사점수를 기입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수부여를 유보한 사실이 있고,	
	- A은 2020.1.31. ㄴ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제청 이전,	

총장 제청 이전 A 면담 현황

연번	임용학기	면접일시	장소	모집단위	성명	비고
1	2018-1	미상		-	-	
2	2018-1	미상		-	-	
3	2018-2	미상		-	-	
4	2019-1	미상		-	-	
5	2019-1	미상		-	-	
6	2019-1	미상		-	-	
7	2019-2	미상		-	-	
8	2019-2	미상		-	-	
9	2020-1	2020.1.31.		ட	J	A 면담 후 탈락 통보
10	2020-1	미상		-	-	
11	2020-1	미상		-	-	
12	2020-1	미상		-	-	
13	2020-1	미상		-	-	
14	2020-1	미상		<u> </u>	-	
15	2020-1	미상		-	-	
16	2020-1	미상		-	-	
17	2020-2	미상		-	-	
18	2020-2	미상		-	-	
19	2021-1	미상		-	-	
20	2021-1	미상		-	-	
21	2021-1	미상		-	-	
22	2021-1	미상		-	-	
23	2021-1	미상		-	-	
24	2021-1	미상		-	-	
25	2021-1	미상		-	-	
26	2021-1	미상		-	-	
27	2021-1	미상		-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7	교원 채용절차 미준수	
	○ 「사립학교법」제5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 채용할	<①, ② 관련> ㅇ경고(1명)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 임용령」제4조의3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르면 대학의 신규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실시 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 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외부심사위원 위촉기준 미충족에 관한 사항】①	
	- 중부대학교는 2018.1학기 K에 대한 기초·전공심사를 진행하면서 외부 심사위원 위촉 없이 내부 심사위원만 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붙임】 "외부 심사 위원 미충족 현황"과 같이 2018.1학기부터 2021.1학기 까지 15차에 걸쳐 지원자 50명에 대한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심사위원 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음	
	【공고·임용직군 불일치에 관한 사항】②	
	- 중부대학교는 2020.1학기 연구전임으로 교원 채용을 공고하고, 이에 지원한 L, M, N을 공고와는 달리 각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ㄷ학과, ㄹ학과, ㅁ학과 강의전임교원으로 임용한	
	사실이 있음	

외부심사위원 미충족 현황

1 - K	
2018-1 2	
2018-1 2	
2018-1 2	
2	
2	
2	
2019-1 7~8	
78	
2019-2 1	
2019-2 1	
2019-2 1	
1	
2020-1	
2020-1	
2020-1	
2020-1	
1	
2020-1	
2020-1	
2020-1	
2020-1	
2020-1	
2020-1	
2020-1	
N 7, 7, 7,	
-, -, -,	
2 -	
M M	
-	
- L -, -, -,	
-	
3 -, -, -,	
2020-2 1	
-	
2021-1	
4~5, -,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8	산학협력단직원 임용 관련 부당 등	
	○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관리규정」제5조 제1항	○ 기관경고
	및 제6조에 따르면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며 직원의 채용, 임명,	
	승진, 표창, 징계 해고 관련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8.1학기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O을 채용	
	하는 등 【붙임】 "산학협력단 신규직원 채용현황"과 같이 2018. 3. 1.부터 2021. 2. 28.까지 산학협력단 직원 40명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채용한 사실이 있음	

【붙임】 <u>산학협력단 신규직원 채용 현황</u>

채용학기	모집단위	신규채용자 성명	채용학기	모집단위	신규채용자 성명
2018-1	-	О	2019-1	-	-
2018-1	-	-	2019-2	-	-
2018-1	-	-	2019-2	-	-
2018-1	-	-	2019-2	-	-
2018-1	-	-	2019-2	-	-
2018-1	-	-	2020-1	-	-
2018-1	-	-	2020-1	-	-
2018-1	-	-	2020-1	-	-
2018-2	-	-	2020-1	-	-
2018-2	-	-	2020-1	-	-
2018-2	-	-	2020-2	-	-
2018-2	-	-	2020-2	-	-
2018-2	-	-	2020-2	-	-
2018-2	-	-	2020-2	-	-
2018-2	-	-	2020-2	-	-
2018-2	-	-	2020-2	-	-
2019-1	-	-	2020-2	-	-
2019-1	-	-	2020-2	-	-
2019-1	-	-	2020-2	-	-
2019-1	-	-	2020-2	-	-
2019-1	-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9	내부신고자 불이익 조치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5조	ㅇ경징계(1명)
	제2항은 부패행위 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 P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7.30. Q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에도 '20.8.10. 학교법인	
	중부학원에 Q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제청한 사실이 있음	
	※ 국민권익위는 '20.8.12. P의 징계 제청에 대해 불이익 조치절차 일시정지를 요구하였고, '20.9.22. 신분보장조치 결정문을 통해 Q에 대한 징계사유 전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기관명 : 학교법인 중부학원, 중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10	l 재임용 심사 면제 부적정	
	○「사립학교법」제53조의2 제7항에 따르면 교원의 재	
	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	○ 경고(I명)
	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중부학원은 I(A의 자)의 재임용 심사 결과 통지의무 마지막 날인 2014.6.30. 중부대학교 정관 제39조의3 제2항에 "부총장을 교내 교원 중에서 임명된 경우 보임기간 부총장으로서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수직 재임용(재계약)시 학교장의 제청에 따라 교원 고유업적에 관계없이 재임용(재계약) 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쳐(2014.9., 2016.9., 2018.9., 2020.9. 2년 단위 재임용) 위 I에 대한 재임용 심사 없이 재임용을 반복해 온 사실이 있음	• 통보 - 사립학교법 재임용 규정의 취지에 부합 하도록 정관을 개정 하고, I에 대한 재 임용 심사를 진행하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안)
11	비리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5조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6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의 동의없이,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중부대학교 R은 2019.6.19. '2019학년도 산학협력단 관련 제1차 진상조사 위원회 회의에서 'Q가 산학협력단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에 제보하였다'는 발언을 통해 산학협력단 예산 사용 등에 관해 부패행위 신고한 Q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실이 있고,	
	- 중부대학교 S는 2020. 7. 14.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로부터 Q의 실명 및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고소장을 전달받아 2020. 7. 15. 고소장 내용중 일부를 중부대학교 T에게 문자로 송부한 사실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 1. 25. 위 R과 S에 대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고자 비밀보장의무위반을 사유로 형사고발 하는 것으로 결정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연번 12	지 적 사 항 기록물 폐기 절차 부적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	○ 기관경고 ○ 통보 - 기록물 폐기 시 관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중부대학교 ◇센터는 2018학년도에 '¬ㅇ' 등 기록물 156권을 폐기하면서 자체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붙임】"기록물 폐기 절차 미준수 폐기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21.4. 감사일 현재까지 자체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생산부서 의견조회,	, L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심의 없이 총 594권의 기록물을 폐기한 사실이 있음	

【붙임】

기록물 폐기절차 미준수 폐기현황

연도	부서	기록물명	수량	폐기일자
2018	-	-	156권	2018.08.20.
	-	-	7권	2019.07.09.
2019	-	-	43권	2019.07.23.
2017	-	-	160권	2019.08.12.
	-	-	15권	2019.08.12.
	-	-	4권	2020.03.18.
2020	-	-	78권	2020.04.23.
	-	-	72권	2020.10.08.
2021	-	-	21권	2021.03.03.
2021	-	-	38권	2021.03.26.

기관명 : 학교법인 중부학원 및 중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13	교원 신규채용 절차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2조 및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 중부학원]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 경고(1명)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하고,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중부대학교】
	사립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ㅇ경고(2명)
	임용하되,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중부대학교는 2018학년도에 ㅂ과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	
	하면서 전형심사(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결과 합격한	
	U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치지 않았음에도	
	2018. 3. 1. 임용 발령하는 등【붙임】"교원 신규채용	
	절차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3.부터 2021.3.까지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하면서 전형심사 결과 합격한	
	위 U 등 28명에 대하여 총장 제청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치지 않았음에도 임용 발령한	
	사실이 있음 * 이용 바라 이후에 사후(2010 2 10)에 이사한 이경우 기회	
	※ 임용 발령 이후인 사후(2018.3.19.)에 이사회 의결을 거침	

【붙임】

교원 신규채용 절차 부적정 현황

연	임용	총장	이사회	임 용		
번	소속	직급	성명	제청일자	의결일자	발령 일자
1		-	U	2018.02.28	2018.03.19	2018.03.16
2	-	-	-	2018.03.08	2018.03.19	2018.03.01
3	-	-	-	2018.02.28	2018.03.19	2018.03.01
4	-	-	-	2018.02.28	2018.03.19	2018.03.01
5	-	ı	-	2018.03.08	2018.03.19	2018.03.01
6	-	-	-	2019.03.06	2019.03.18	2019.03.01
7	-	-	-	2019.02.25	2019.03.18	2019.03.01
8	-	-	-	2019.02.25	2019.03.18	2019.03.01
9	-	-	-	2019.03.06	2019.03.18	2019.03.01
10	-	-	-	2019.03.03	2019.03.18	2019.03.01
11	-	-	-	2019.02.25	2019.03.18	2019.03.01
12	ㅁ전공	-	N	2020.03.05	2020.03.30	2020.03.16
13	-	-	-	2020.03.05	2020.03.30	2020.03.16
14	<	-	L	2020.03.05	2020.03.30	2020.03.16
15	ㄹ전공	-	М	2020.03.05	2020.03.30	2020.03.16
16	-	-	-	2020.03.05	2020.03.30	2020.03.16
17	크전공	-	-	2020.03.05	2020.03.30	2020.03.16
18	-	-	-	2021.02.19	2021.03.02	2021.03.01
19	-	-	-	2021.02.19	2021.03.02	2021.03.01
20	ㄴ전공	-	-	2021.02.19	2021.03.02	2021.03.01
21	-	-	-	2021.02.19	2021.03.02	2021.03.01
22	-	-	-	2021.02.19	2021.03.02	2021.03.01
23	-	-	-	2021.02.19	2021.03.02	2021.03.01
24	-	-	-	2021.02.19	2021.03.02	2021.03.01
25	-	-	-	2021.02.19	2021.03.02	2021.03.01
26	-	-	-	2021.02.19	2021.03.02	2021.03.01
27	-	-	-	2021.02.19	2021.03.02	2021.03.01
28	-	-	-	2021.02.19	2021.03.02	2021.03.01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14	의원면직 제한대상 미확인	
	○ 「사립학교법」제61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교원의	ㅇ주의(2명)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 중인 때,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되고,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중부대학교는 2018. 4. 11. 의원면직(2018. 4. 30.자) 신청한	
	V에 대하여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를 감사원 등에	
	확인하지 않은 채 2018.4.30. 의원면직 처리하는 등	
	【붙임】"의원면직 제한대상 미확인 현황"과 같이	
	중부대학교는 2018. 4.부터 2020. 4.까지 의원면직 신청한	
	위 V 등 교원 18명에 대하여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	
	를 감사원 등에 확인하지 않은 채 의원면직 처리한	
	사실이 있음	

의원면직 제한대상 미확인 현황

Alui	1 &	7] 7	2377	의원면직	파기이크	제학	한대상 여	부 확인일	실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신청일자	면직일자	감사원	검찰	경찰	교육부
1	-	-	V	2018.04.11.	2018.04.30.	-	-	-	-
2	-	-	-	2018.07.06.	2018.08.31.	-	-	-	-
3	-	-	-	2018.08.31.	2018.08.31.	-	-	-	-
4	-	-	-	2018.08.25.	2018.08.31.	-	-	-	-
5	-	-	-	2018.08.31.	2018.08.31.	-	-	-	-
6	-	-	-	2018.08.01.	2018.08.31.	-	-	-	-
7	-	-	-	2018.08.08.	2018.08.31.	-	-	-	-
8	-	-	-	2018.08.20.	2018.08.31.	-	-	-	-
9	-	-	-	2018.08.20.	2018.08.31.	-	-	-	-
10	-	-	-	2018.10.31.	2018.10.31.	-	-	-	-
11	-	-	-	2019.02.15.	2019.02.15.	-	-	-	-
12	ㅁ전공	-	-	2019.02.23.	2019.02.28.	-	-	-	-
13	-	-	-	2019.06.05.	2019.08.31.	-	-	-	-
14	-	-	-	2019.08.11.	2019.08.31.	-	-	-	-
15	-	-	-	2020.01.31.	2020.01.31.	-	-	-	-
16	ㄴ전공	-	-	2020.02.29	2020.02.29	-	-	-	-
17	-	-	-	2020.02.21	2020.02.29	-	-	-	-
18	-	-	-	2020.04.03	2020.04.03	-	-	-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15	임용 결격사유 및 성범죄경력 미조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국가	○ 경고(2명)
	공무원법」제33조에는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있고,「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는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중부대학교는 2018.3.1. W을 임용(신규채용)하면서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학교법인 중부학원에 임용 제청하는 등 【붙임1】"결격사유 조회 미실시현황"과 같이 2018.3.부터 2021.3.까지 위 W 등 113명을 교원으로 임용(신규채용)하면서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학교법인 중부학원에 임용 제청한 사실이 있으며,	성범죄 경력 소회 미실시자에 대해 결격사유 및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
	· 이 중, 2018.9.1.임용된 X에 대하여 임용일로부터 49일 지난 후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는 등 【붙임2】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및 지연 현황"과 같이	
	2018. 9.부터 2020. 9.까지 위 X 등 28명에 대하여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거나 임용일로부터 짜게노 7이 기계노 40이 기나 후 조치로 사사하	
	짧게는 7일 길게는 49일 지난 후 조회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붙임1】

결격사유 조회 미실시 현황

연					결격사유		조 회	
원 변	소속	소속 직급 성명		임용일자	요청일자	회신일자	지연일수	
1	-	-	W	2018.03.01	-	-	미실시	
2	-	-	-	2018.03.01	-	-	미실시	
3	-	-	-	2018.03.01	-	-	미실시	
4	-	-	-	2018.03.01	-	-	미실시	
5	-	-	-	2018.03.01	-	-	미실시	
6	<u></u> レ전공	-	-	2018.03.01	-	-	미실시	
7	<u></u> レ전공	-	-	2018.03.01	-	-	미실시	
8	-	-	-	2018.03.01	-	-	미실시	
9	-	-	-	2018.03.01	-	-	미실시	
10	-	-	-	2018.03.01	-	-	미실시	
11	-	-	-	2018.03.01	-	-	미실시	
12	-	-	-	2018.03.01	-	-	미실시	
13	H과	-	U	2018.03.16	-	-	미실시	
14	-	-	-	2018.03.01	-	-	미실시	
15	-	-	-	2018.03.01	-	-	미실시	
16	-	-	X	2018.09.01	-	-	미실시	
17	-	-	-	2018.09.01	-	-	미실시	
18	-	-	-	2018.09.01	-	-	미실시	
19	-	-	-	2018.09.01	-	-	미실시	
20	-	-	-	2018.09.01	-	-	미실시 미실시	
21 22	-	-	-	2019.03.01	-	-	미설시 미실시	
23	<u>-</u>	-	-	2019.03.01	_	-	미실시	
24	<u>-</u>	-	-	2019.03.01	-	-	미실시	
25	<u>-</u>	-	-	2019.03.01	-	_	미실시	
26		_	-	2019.03.01	_	_	미실시	
27	ㅂ과	_	_	2019.03.01	_	_	미실시	
28	-	_	_	2019.03.01	_	_	미실시	
29	-	-	-	2019.03.01	-	-	미실시	
			<중 략>		I.		, , ,	
89	-	-	-	2021.03.01	-	-	미실시	
90	-	-	-	2021.03.01	-	-	미실시	
91	-	-	-	2021.01.15	-	-	미실시	
92	-	-	-	2021.01.15	-	-	미실시	
93	-	-	-	2021.02.01	-	-	미실시	
94	-	-	-	2021.03.01	-	-	미실시	
95	ㅁ전공	-	-	2021.03.01	-	-	미실시	
96	ㅁ전공	-	-	2021.03.01	-	-	미실시	
97	-	-	-	2021.02.01	-	-	미실시	
98	-	-	-	2021.03.01	-	-	미실시	
99	-	-	-	2021.03.01	-	-	미실시	
100	-	-	-	2021.03.01	-	-	미실시	
101	-	-	-	2021.03.01	-	-	미실시	
102	-	-	-	2021.03.01	-	-	미실시	
103 104	<u>-</u>	-	-	2021.03.01 2021.03.01	-	-	미실시 미실시	
104	<u>-</u>	-	-	2021.03.01	-	-	미실시 미실시	
105	<u> </u>	-	-	2021.03.01	-	-	미실시	
107	<u>-</u>	-	-	2021.03.01	-	-	미실시	
107	 느전공	-	-	2021.03.01	-	-	미실시	
109	<u> </u>	-	-	2021.03.01	-	-	미실시	
110	<u> </u>	-	-	2021.03.01	_	_	미실시	
111	<u>-</u>	-	-	2021.03.01	-	-	미실시	
112	<u>-</u>	-	-	2021.03.15	-	-	미실시	
113	<u>-</u>	_	-	2021.03.15	-	-	미실시	
110	<u>-</u>		_	2021.05.15		-	[기원의	

【붙임 2】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및 지연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임용일자	성	범죄 경력 조회	회	
12.51	257	41 H	78 78	무요되자	요청일자	회신일자	지연일수	
1	-	-	X	2018.09.01	2018.10.11	2018.10.20	49	
2	-	-	-	2018.09.01	2018.10.11	2018.10.20	49	
3	-	-	-	2018.09.01	2018.10.11	2018.10.20	49	
4	-	-	-	2018.09.01	2018.10.11	2018.10.20	49	
5	-	-	-	2018.09.01	2018.10.11	2018.10.20	49	
6	-	-	-	2019.03.01	2019.03.24	2019.04.08	38	
7	-	-	-	2019.03.01	2019.03.24	2019.04.08	38	
8	-	-	-	2019.03.01	2019.03.24	2019.04.08	38	
9	-	-	-	2019.03.01	2019.03.24	2019.04.08	38	
10	ㅂ과	-	-	2019.03.01	2019.03.24	2019.04.08	38	
11	-	-	-	2019.03.01	2019.03.24	2019.04.08	38	
12	-	-	-	2019.03.01	2019.03.24	2019.04.08	38	
13	-	-	-	2019.03.01	2019.03.24	2019.04.08	38	
14	-	-	-	2019.03.01	2019.03.24	2019.04.08	38	
15	-	-	-	2019.03.01	2019.03.24	2019.04.08	38	
16	-	-	-	2019.03.01	2019.03.24	2019.04.08	38	
17	-	-	-	2019.03.01	2019.03.24	2019.04.08	38	
18	-	-	-	2019.03.01	2019.03.24	2019.04.08	38	
19	-	-	-	2019.03.01	2019.03.24	2019.04.08	38	
20	-	-	-	2019.03.01	2019.03.24	2019.04.08	38	
21	-	-	-	2019.03.01	2019.03.24	2019.04.08	38	
22	-	-	-	2019.03.01	2019.03.24	2019.04.08	38	
23	-	-	-	2019.04.01	2019.03.24	2019.04.08	7	
24	-	-	-	2020.04.01	-	-	미실시	
25	-	-	-	2020.04.01	-	-	미실시	
26	-	-	-	2020.04.01	-	-	미실시	
27	-	-	-	2020.04.03	-	-	미실시	
28	-	-	-	2020.09.01	-	-	미실시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16	사전 미허가 겸직	
	○ 「사립학교법」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ㅇ주의(4명)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고 되어있고,「국가공무원법」제64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며,	
	「중부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교원은	
	보수가 수반된 상근하는 다른 직을 겸임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한 겸직, 비영리법인의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은 경우와 교원창업 시에는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도,	
	- 중부대학교 Y은 2020.3.1.부터 ▷▷에서 이사로 겸직	
	하면서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 시작일	
	로부터 29일 지난 후(허가일자 : 2020. 3. 30.) 총장의 허가	
	를 받는 등【붙임】"사전 미허가 겸직 현황"과 같이	
	2018. 6.부터 2021. 4. 감사일 현재까지 위 Y 등 교수	
	4명은 ▷▷ 등 총 4개 기관에서 겸직하면서 총장 허가를	
	받지 않거나 겸직 시작일로부터 짧게는 7일 길게는	
	31일 지난 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음	

사전 미허가 겸직 현황

연					겸직 현	항			겸직 허가	
번	소속(직급)	성명	겸직 기관명	직위	근무 형태	실제 겸직기간	보수 등 총액	겸직 허가일자	겸직 허가기간	지연일수
1	-	Y	-	-	-	2020.03.01.~ 현재	-	2020.03.30.	2020.03.01.~ 2021.12.19	29일
2	-	-	-	-	-	2020.01.13.~ 현재	-	2020.02.13.	2020.01.13.~ 2023.01.12	31일
3	-	-	-	-	-	2020.03.26.~ 현재	-	2020.04.02.	2020.03.26.~ 2023.03.25	7일
4	-	-	-	-	-	2018.06.20.~ 현재	-	2018.07.18.	2018.06.20.~ 2020.06.19	·최초: 28일 ·연장: 미허가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17	미허가 해외여행 실시	
	○「사립학교법」제55조 제1항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 기관주의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제58조에는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중부대학교 교원복무규정」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교원이 해외여행 및 연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여행허가원, 휴·보강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여행개시일 1주 전까지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중부대학교 Z은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8.7.10.	
	부터 2018. 7. 13.까지 해외여행을 실시하는 등【붙임】	
	"미허가 해외여행 실시 현황"과 같이 2018.3.부터	
	2021. 2.까지 위 Z 등 교수 41명은 총 83회에 걸쳐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여행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미허가 해외여행 실시 현황

чя	해당	교원		출입국	·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출국	입국
				2018.07.10	2018.07.13
				2018.10.25	2018.10.31
1	-	-	Z	2019.07.30	2019.08.02
				2019.08.15	2019.08.18
				2019.10.27	2019.11.03
2	-	-	-	2018.11.03	2018.11.05
				2019.01.04	2019.01.08
3	-	_	_	2019.02.14	2019.02.19
				2019.07.30	2019.08.05
4	-	-	-	2019.09.24	2019.10.03
5	 ㄴ전공	-	-	2019.02.01	2019.02.05
6	-	-	-	2018.05.22	2018.05.25
33	-	-	-	2020.01.22	2020.01.27
24		<중	탁>	2019.07.19	2019.07.23
34	-	-	-	2020.02.18	2020.02.26
				2018.07.12	2018.07.16
25	, a) a			2019.01.05	2019.01.08
35	<u> </u>	-	-	2019.02.02	2019.02.06
				2019.12.10	2019.12.13
36	-	-	-	2020.01.03	2020.01.06
27				2018.07.19	2018.07.25
37	-	-	-	2019.02.03	2019.02.11
				2018.03.01	2018.03.05
20				2018.05.24	2018.05.27
38	-	-	-	2019.04.05	2019.04.09
				2019.07.13	2019.07.16
39	ㅁ전공	-	-	2020.01.10	2020.01.14
40				2018.11.30	2018.12.02
40	-		-	2019.04.19	2019.04.21
11				2019.07.20	2019.07.23
41	-	_	_	2020.01.25	2020.01.29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18	외부강의등 지연 신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에	ㅇ경고(4명)
	따르면 "공직자 등"에는 사립대학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하고, 「같은 법」제10조 제2항	○주의(12명)
	및「같은 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일시,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개정법률 시행일(2010.5.27.) 이전에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중부대학교 AA은 2018.11.6. '△(▽▽)'에 참여하고	
	신고 기한으로부터 4일이 지난 2018.11.12. 외부강의	
	신고를 하는 등 【붙임】 "외부강의등 지연 신고 현황"과	
	같이 2018. 3.부터 2020. 12.까지 위 AA 등 교수 16명은	
	총 64회에 걸쳐 외부강의등에 참여하고 신고 기한으	
	로부터 짧게는 1일 길게는 233일 지난 후 신고한	
	사실이 있음	

외부강의등 신고 지연 현황

연 번	소속	직급	성명	요청기관	외부강의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신고기한	신고일자	지연 일수 *																
1				$\nabla \nabla$	人	2018-11-06	2018-11-06	2018-11-08	2018-11-12	4																
2				$\nabla \nabla$	人	2019-11-07	2019-11-07	2019-11-18	2020-02-26	100																
3				-	-	2018-07-18	2018-07-18	2018-07-20	2018-11-12	115																
4				-	-	2019-09-17	2019-10-19	2019-10-31	2020-02-26	118																
5				-	-	2020-09-05	2020-09-05	2020-09-17	2020-10-12	25																
6				-	-	2018-04-04	2018-04-04	2018-04-06	2018-04-22	16																
7		•		-	-	2018-07-31	2018-07-31	2018-08-02	2018-11-12	102																
8			-								-	-	2020-11-25	2020-11-25	2020-12-07	2020-12-09	2									
9	-			AA	-	-	2018-04-18	2018-04-18	2018-04-20	2018-04-22	2															
10				-	-	2018-04-16	2018-04-16	2018-04-18	2018-04-22	4																
11						-	-	2020-11-24	2020-11-24	2020-12-04	2020-12-29	25														
12				-	-	2019-01-15	2019-01-15	2019-01-17	2019-02-14	28																
13				-	-	2019-04-24	2019-05-03	2019-05-06	2019-07-15	70																
14																				-	-	2019-02-21	2019-04-01	2019-04-03	2019-07-15	103
15																	-	-	2018-07-26	2018-07-26	2018-07-30	2018-11-12	105			
16																			_				-	-	2020-08-01	2020-09-23
17				-	-	2019-06-24	2019-07-11	2019-07-22	2019-10-09	79																
18	-	-	-	-	-	2020-06-11	2020-06-11	2020-06-22	2020-06-30	8																
19	-	-	-	-	-	2020-01-10	2020-01-10	2020-01-20	2020-02-06	17																

연 번	소속	직급	성명	요청기관	외부강의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신고기한	신고일자	지연 일수 [*]																											
20				-	-	2019-07-13	2019-07-13	2019-07-25	2019-10-21	88																											
21	-	-	-	-	-	2019-07-06	2019-07-06	2019-07-18	2019-10-21	95																											
22				-	-	2019-12-10	2019-12-10	2019-12-20	2020-01-16	27																											
23				-	-	2018-07-29	2018-07-29	2018-08-01	2018-08-17	16																											
24				-	-	2020-12-31	2020-12-31	2021-01-11	2021-02-03	23																											
25	-	-	-	-	-	2019-05-15	2019-05-17	2019-05-20	2019-07-22	63																											
26				-	-	2018-03-02	2018-03-08	2018-03-12	2018-03-15	3																											
27				-	-	2019-04-11	2019-04-11	2019-04-15	2019-07-22	98																											
28					-	-	2019-06-08	2019-06-08	2019-06-20	2019-07-23	33																										
29				-	-	2020-07-24	2020-07-24	2020-08-03	2020-10-07	65																											
30				-	-	2018-11-20	2018-11-20	2018-11-22	2018-12-06	14																											
31				-	-	2020-10-19	2020-10-19	2020-10-29	2020-12-19	51																											
32				-	-	2019-03-21	2019-03-21	2019-03-25	2019-08-23	151																											
33				-	-	2019-05-23	2019-05-23	2019-05-27	2019-08-23	88																											
34				-	-	2020-11-17	2020-11-17	2020-11-27	2020-12-19	22																											
35				-	-	2019-06-25	2019-06-25	2019-07-05	2019-08-23	49																											
36	-	-	-	- 	-	-	-	-	-	-	- 	-	-	-	-	-	-	-	2020-11-03	2020-11-03	2020-11-13	2020-12-19	36														
37				-	-	2020-11-27	2020-11-27	2020-12-07	2020-12-19	12																											
38																															-	-	2020-09-25	2020-09-25	2020-10-05	2020-12-19	75
39					-	-	2020-09-18	2020-09-18	2020-09-28	2020-10-07	9																										
40				-	-	2020-09-03	2020-09-03	2020-09-14	2020-10-07	23																											
41				-	-	2020-02-06	2020-02-06	2020-02-17	2020-10-07	233																											
42				-	-	2020-06-17	2020-06-17	2020-06-29	2020-10-07	100																											

연 번	소속	직급	성명	요청기관	외부강의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신고기한	신고일자	지연 일수 *		
43				-	-	2018-04-17	2018-04-17	2018-04-19	2018-05-02	13		
44				-	-	2018-05-24	2018-05-24	2018-05-28	2018-06-08	11		
45			_	_		-	-	2018-04-13	2018-04-13	2018-04-16	2018-05-08	22
46				-	-	2018-04-13	2018-04-13	2018-04-16	2018-05-02	16		
47				-	-	2018-04-17	2018-04-17	2018-04-19	2018-05-02	13		
48				-	-	2018-07-12	2018-07-12	2018-07-16	2018-08-14	29		
49				-	-	2018-07-25	2018-07-25	2018-07-27	2018-08-14	18		
50				-	-	2018-12-14	2018-12-14	2018-12-17	2018-12-19	2		
51	-	-	-	-	-	2019-09-09	2019-09-09	2019-09-19	2019-09-25	6		
52	-	-	-	-	-	2018-09-18	2018-09-18	2018-09-20	2018-09-27	7		
53				-	-	2018-04-13	2018-04-13	2018-04-16	2018-04-18	2		
54	-	-	-	-	-	-	-	2018-12-11	2018-12-11	2018-12-13	2018-12-14	1
55	-	-	-	-	-	2019-04-21	2019-04-21	2019-04-24	2019-04-25	1		
56	-	-	-	-	-	2020-02-08	2020-02-22	2020-03-05	2020-03-09	4		
57				-	-	2018-10-16	2018-10-16	2018-10-18	2018-10-20	2		
58	-	-	-	-	-	2020-05-29	2020-05-29	2020-06-08	2020-06-15	7		
59	-	-	-	-	-	2020-09-04	2020-09-04	2020-09-14	2020-10-19	35		
60				-	-	2018-05-26	2018-05-26	2018-05-30	2018-08-24	86		
61	-	-	-	-	-	2018-03-19	2018-03-19	2018-03-21	2018-04-03	13		
62				-	-	2019-01-30	2019-01-30	2019-02-01	2019-02-11	10		
63				-	-	2019-04-16	2019-04-16	2019-04-18	2019-06-27	70		
64	-	-	-	-	-	2020-05-18	2020-05-18	2020-05-28	2020-05-29	1		

^{*} 신고 기한으로부터 지연한 일수

기관명 : 학교법인 중부학원, 중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19	제3자간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등	
	○「사립학교법」제27조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①, ② 관련>
	관하여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학교법인 중부학원】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법」	○ 경고(1명)
	제29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	
	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시정 제3자간 발생한 소
	구분하고, 교비회계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	송에 대하여 교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에	회계에서 집행한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송비용 합계 190, 000천원과 법인회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 및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 에서 집행한 합계
	되어 있고,「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에 따르면	115,500천원을 법인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회계에서 교비회계로
	되어 있고,「사립학교법」제16조 및 「학교법인 중부	전출하기 바람
	학원 정관」제27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예산·결산·	【중부대학교】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①, ② 관련>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경징계(2명)
	【제3자간 소송 관련 비용 교비회계 집행에 관한 사항】… ①	< ② 관련 > ○경징계(2명)
	- 중부대학교는 2011.12.2. < < 와 AB 등 등기상속인	0 0 1 (= 0)
	(16명)간 발생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 경고(2명)
	(원고: ◁◁, 피고: AB 등 16명)'소송에 대하여 학교법인	< 별도조치 >
	중부학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님에도 '고양캠퍼스 예정	_ ,
	부지 확보'라는 명목으로 피고측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고측이 부담하여야 할 변호인 선임료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88,0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붙임1】"제3	
	자간 소송 관련 비용 교비회계 집행 현황"과 같이	
	2011. 12. 2.부터 2014. 3. 12. 까지 위 소송 등 제3자간	
	소송 3건에 대하여 학교법인 중부학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님에도 '고양캠퍼스 예정 부지 확보'라는 명목으로	
	피고측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고측이	
	부담하여야 할 변호인 선임료 합계 190,0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학교법인 부담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에 관한 사항】… ②	
	- 또한, 중부대학교는 2015.8.13.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고양캠퍼스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원고: ♢♢, 피고: 학교법인 중부학원)'소송 건의 변호인	
	선임료 22,0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붙임	
	2] "법인 부담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현황"과 같이	
	2015. 8. 13.부터 2020. 10. 12. 까지 학교법인에서 부담	
	해야 할 위 소송 등 3건에 대한 소송비용 합계	
	115,5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붙임1】

제3자간 소송 관련 비용 교비회계 집행 현황

(단위:천원)

연번	집행일자	적요 (사건명)	원고 (청구인)	퍼고 (피청구인)	지급처	지급액			
1	2011-12-02	-	$\triangleleft \triangleleft$	AB 등	-	88,000			
2	2012-04-27		$\triangleleft \triangleleft$	AB 등	-	20,000			
3	2013-11-28	_	$\triangleleft \triangleleft$	AB 등	-	72,000			
4	2014-03-12	-	$\triangleleft \triangleleft$	AB 등	-	10,000			
	합계								

【붙임2】

법인 부담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현황

(단위:천원)

연번	집행일자	적요 (사건명)	원고 (청구인)	피고 (피청구인)	지급처	지급액	비고		
1	2015-08-13	-	학교법인 중부학원	\Leftrightarrow	-	22,000	착수금		
2	2019-02-20	-	학교법인 중부학원	\Leftrightarrow	-	55,000	성공비		
3	2019-10-02	-	학교법인 중부학원	\Leftrightarrow	-	38,500	착수금		
	합계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20	대학 특성화사업 인건비 집행 부적정	
	○ 「대학 특성화사업(CK) 관리운영 규정('17.3.30.)」제33조	ㅇ경고(3명)
	제2항 및 제5항 및 제39조에 따르면 사업비의 지출	< 별도조치 >
	항목은 인건비, 장학금 등이 있고 전문기관의 장은	○ 통보(한국연구재단)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 세부집행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대학 및 사업단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로써 사업비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관리·운용 및 기록·보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한국연구재단	
	대학 특성화사업 사업비 집행기준('17.3.30.)」에 따르면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은 지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도,	
	- 중부대학교는 "대학 특성화(CK) 사업(사업기간 : '15.3.1.~	
	′19.2.28.,)″을 추진하면서 2018. 5. 1.부터 ◇과에 채용되어	
	근무중인 기존 직원 AC(계약기간 '18.5.1.~'19.5.8.)의 급여	
	지급시 대학 특성화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직원이	
	아님에도 2018. 10. 1.부터 2019. 2. 28.까지 총 5회에 걸쳐	
	급여 합계 9,229,950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대학 특성화	
	사업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리관명: 중부대학교

연번 사 핤 처분(안) 지 적 21 대학 특성화사업단 원고료 등 집행 부당 <①, ② 관련> ○「대학특성화사업 관리운영 규정('17.3.30.)」제33조에 ○ 경징계(1명) 따르면 사업비 집행 시 국고지원금 비목별 계상 집행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장이 장관의 <① 관련> 승인을 받아 사업비 세부 집행기준을 정할 수 있는 ○ 경고(2명)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 실무자 워크숍 자료('14.10.29.)' 및 「대학 특성화사업(CK) ㅇ톳보 운영 자료집('18.2.)」에 따르면 신규 프로그램 및 교육 - 기존 교재를 일부 과정을 위한 교과목 등의 개발에 대하여 원고료 지급이 수정 및 편집하고 수령한 원고료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개정 증보판인 경우 정오표 합계 21,000천원 중 등에 근거하여 원고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존 정오표 등을 기준 교재의 일부를 발췌·편집하거나 교육 콘텐츠 제공 으로 산정하지 않 업체의 공개 콘텐츠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재 는 등 부적정하게 지급한 원고료를 개발비를 집행하는 경우를 부적정 집행사례로 안내하고 정산하고 당사자들 있고, 「대학 특성화 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알림(한국연구 로부터 회수하여 재단, '17.3.30.)」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에 관련회계로 세입 조치 하기 바람 따르면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를 주요 집행 제한 항목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인건비 항목에서 기존 <② 관련>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등은 지급 불가하고 단, ○ 시정(회수)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 부적정하게 수령한 성과급 합계 8,400 극대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과급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천원을 당사자로 산출물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터 회수하여 교비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인센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티브 지급 시에는 사전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별도조치> 되어 있는데도, ㅇ 통보(한국연구재단)

【원고료 수령에 관한 사항 】 …………①

- 중부대학교 AD와 L은 2014년도에 발간한 교재 '○(AD 지음, ♡♡)'을 일부 오류만 수정하여 'ㅈ(AD·L 지음)' 단행본을 개정판이 아닌 초판 형식으로 발행(2018.2. 28.)하고, 2018.1.26. 위 단행본에 대하여 정오표 등에 근거하지 않고 원고료를 산정하고 합계 7,000천원을 집행하여 수령하는 등【붙임】"원고료 수령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1.26.부터 2019.1.23.까지 위 AD 등 3명은 위 단행본 등 총 3권에 대하여 오류일부 수정 (1권), 종전 콘텐츠의 내용 일부 발췌·편집(2권)한 후 정오표 등에 근거하지 않거나 일부 발췌·편집한 분량도 포함하여 원고료를 산정하고 합계 21,000천원을 집행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음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②

- 중부대학교 AD는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사전에 타당한 평가기준도 수립하지 않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2018. 2. 14. '*차년도 ◇사업단 성과금 지급('17. 3. 1. ~ '18. 2. 28., 내부결재)'건에 '사업단 단장으로서 총괄 업무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명목으로 성과급을 월 700천원 상당으로 책정하고 2018. 2. 23. 성과급 합계 8,4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원고료 수령 부적정 현황

(단위: 천원)

연	내부			개与	L증반						
번		집필기간	형식 발행일 도서명(저자)		수령인	산출기초	원고료	수령일	비고		
1	′18.1.16.	′17.11.6.~	1 A W 1 187 W 1	판 [*] '18.2.28.	F 1 /18 2 28 T	太	AD	20,000원× A4 110매 2,200	′18.1.26.	일부	
1	10.1.10.	′18.1.10.				L	20,000원× A4 240매	4,800	16.1.26.	개정판 발췌	
						AD	20,000원× A4 50매	1,000			
2	′18.12.29.	18.12.29. 18.12.21. 편저	1 M M	편저	편저 19.2.26.	(AD, -, L)	-	20,000원× A4 150매	3,000	′19.1.10.	
					L)	L	14000원× A4 150매	3,000		발췌	
						AD	20,000원× A4 50매	1,000		·편提	
3	′19.1.16.	′18.9.6.~ ′19.1.11.	편저	′19.2.26.	i. (AD, -, L)	-	20,000원× A4 150매	3,000	′19.1.23.		
						L	14000원× A4 150매	3,000			
	합겨]						21,000			

^{*} 초판이 아닌 개정판

	· · · · · · · · · · · · · · · · · ·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안)
22	초빙교원 수업 미배정	
	○「고등교육법」제17조에 따르면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 경고(7명)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	ㅇ주의(1명)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	통보
	하게 할 수 있고,「중부대학교 초빙교원에 관한 규정	· - 초빙교원이 법령
	('07.12.24.,'17.9.26.)」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초빙교원은	등에 따라 교육이나
	본 대학의 강의 또는 실험실습 지도를 담당하며, 주당	연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시간 이상의 강의나 실험실습 지도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중부대학교는 2015.3.27.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AE에	
	대하여 수업면제에 대한 총장의 승인도 없이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 등 【붙임】 "초빙교원 수업 미배정 현황"	
	과 같이 2015. 3. 27.부터 2019. 8. 30.까지 위 AE 등 초빙	
	교원 2명에 대하여 수업면제에 대한 총장의 승인도	
	없이 수업을 배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붙임】

초빙교원 수업 미배정 현황

연번	연도-학기	소속	성명	비고
1	2015-1	-	AE	
2	2015-2	-	n,	
3	2016-1	-	n,	
4	2016-2	-	n,	
5	2017-1	-	n,	계약서상 특정업무 기재
6	2017-2	-	n	
7	2018-1	-	n,	
8	2018-2	-	n	
9	2019-1	-	n n	
10	2016-2	-	-	
11	2017-1	-	n,	
12	2017-2	-	n,	계약서상 특정업무 미기재
13	2018-1	-	n	연구결과물 제출
14	2018-2	-	n	

기관명: 학교법인 중부학원, 중부대학교

연번 핤 처분(안) 지 젘 사 23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중부학원』 ㅇ기관경고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ㅇ통보 - 법령 등에 맞게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업무활동비 지급에 외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및 제17조 관련 【별표1】에 하기 바람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중부대학교】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는 ○ 경고(5명)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이며, 「사립대학 회계관리 ㅇ통보 안내서(사립대학정책과-645, 2017.1.17.)」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 업무관련성 여부에 지출은 내부품의 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한 검토 없이 카드회사 고지서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만으로 집행한 업무 없는 경우에는 지출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중부대 추진비 사용금액 학교 업무활동비 지급 운영(안)('18.9.12.)' 및 '중부대학교 합계 24,419,768원에 법인(클린)카드 운영 방안('15.10)'에 따르면 총장, 부총장, 대해 정산을 실시 하고, 업무 관련성이 행정지원처의 업무활동비는 공휴일 및 주말, 목적불분명 증빙되지 않는 지역 및 업종, 클린카드 사용으로 업종 제한 지역(유 금액은 당사자들 흥주점 등), 비정상적인 시간대(심야시간대 : 23시 이후)에 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사용할 수 없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시 조치하기 바람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내부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중부학원은 1999.9.1. '업무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업무활동비를 대학교의 운영상 특정업무를

사용목적 등 未명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원)

연번	사용자	사용일자	시간	금액	상호(가맹점명)	소재지
1	Р	2018.09.14	18:25:45	97,300	<u>`</u>	-
2	"	2018.10.03	12:26:21	100,000	<u>-</u>	-
3	"	2018.10.04	13:26:14	165,000	<u>-</u>	-
4	"	2018.10.05	13:21:43	56,000	-	-
5	"	2018.10.11	13:10:58	90,000	-	-
6	"	2018.10.11	19:59:17	263,000	-	-
7	"	2018.10.16	18:55:01	20,000	-	-
8	"	2018.10.17	20:26:30	77,000	-	-
9	"	2018.10.18	13:26:21	25,600	-	-
10	"	2018.10.19	20:43:45	166,000	-	-
11	"	2018.10.26	13:16:20	114,000	-	-
12	"	2018.11.01	21:23:40	180,000	-	-
13	"	2018.11.02	13:29:47	245,000	-	-
14	"	2018.11.02	19:49:37	186,000	-	-
15	"	2018.11.07	18:08:45	11,000	-	-
					<중 략>	
342	I	2019.03.17	21:13:57	20,670	-	-
343	"	2019.03.24	20:57:24	49,000	-	-
344	"	2019.03.30	16:31:08	50,000	-	-
345	"	2019.04.06	21:06:04	24,786	-	-
346	"	2019.04.07	19:28:44	24,000	-	-
347	"	2019.04.14	20:10:56	21,000	-	-
348	"	2019.05.15	0:37:41	6,400	-	-
349	"	2019.05.15	0:54:58	28,000	-	-
350	"	2019.05.15	0:57:48	15,000	-	-
351	"	2019.06.09	21:50:37	16,225	-	-
352	"	2019.06.15	22:56:34	56,943	-	-
353	"	2019.08.25	15:41:29	19,100	-	-
354	"	2019.10.05	14:07:04	13,100	-	-
355	"	2020.01.15	00:42:25	51,975	-	-
		합 계		24,419,768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24	AF 관사 관리비 교비회계 집행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는 교비회계의	○ 경고(3명)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	ㅇ주의(1명)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및 기타	○시정(회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되어 있고,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 및 제21조 제2항에는	관사 관리비 등 합계 3,936,720원을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당사자로부터 회수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중부대학교 관사관리에	" H-J 1-12 1
	관한 규정('17.3.8.)」에 따르면 취사 경비, 각종 집기,	
	청소 및 위생용품 다과류 등 기타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중부대학교는 2016.4.21. AF이 관사(대전 서구 소재)를	
	사용하면서 부담해야할 아파트 관리비 등 공공요금	
	405,8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붙임】"AF	
	관사 관리비 등 교비회계 집행현황"과 같이 2016.4.	
	부터 2017.4.14.까지 AF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	
	등 총 12건 합계 3,936,72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2018. 9월분부터 사용자가 부담	

AF 관사 관리비 등 교비회계 집행현황

(단위 : 원)

연번	일자	사용자	적요	집행금액		
언민	실사	사용사	식쑈	관리비	TV수신료	합계
1	2016-04-21	AF	관리비(15.12월)	403,300	2,500	405,800
2	2016-04-21	AF	관리비(16.1,2월)	844,610	5,000	849,610
3	2016-05-04	AF	관리비(16.03월)	323,430	2,500	325,930
4	2016-05-26	AF	관리비(16.04월)	253,720	2,500	256,220
5	2016-06-28	AF	관리비(16.05월)	202,890	2,500	205,390
6	2016-07-29	AF	관리비(16.06월)	197,780	2,500	200,280
7	2016-10-07	AF	관리비(16.08월)	253,890	2,500	256,390
8	2016-11-10	AF	관리비(16.09월)	167,390	2,500	169,890
9	2016-12-09	AF	관리비(16.10월)	236,290	2,500	238,790
10	2017-01-05	AF	관리비(16.11월)	300,290	2,500	302,790
11	2017-02-28	AF	관리비(16.12월)	370,250	2,500	372,750
12	2017-04-14	AF	관리비(17.02월)	350,380	2,500	352,880
		합 계		3,904,220	32,500	3,936,720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25	등록금회계 이월금 관리 부적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 경고(3명)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에는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제32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대학	
	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 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교육부의 '사립대학 이월금 처리기준 안내(2014.8,	
	2017.1.)' 및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예·결산서 작성 유의	
	사항'에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을 당해연도 교비회계	
	(등록금 회계) 수입 총액의 일정비율{('18연도 이후) 1%}	
	이내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이월은 이월금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기타자금(불용액, 예산	
	절감, 사업취소 등)으로 되어 있는데도,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 이월금의	구분	
	 구 분	의 미	
	명시이월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승인 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사고이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 해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 사고이월이 되기 해서는 구 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 중부대학	고는 2018년 고양캠퍼스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_ , , ,	용액 12억원을 기타이월 처리해야 함에도 사고	
		로 처리하는 등 【붙임1】"등록금회계 기타	
		-적정 처리 현황"과 같이 2018회계연도부터	
		년도까지 불용액 등 합계 4,926,519천원을 기타	
		로 처리해야 함에도 명시 또는 사고이월금으로	
	처리하였	고,	
	·이에 따라	2018회계연도 실제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은	
		년원으로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 한도(634,984	
		1,983,808천원을 초과하여 이월하는 등 【붙임2】	
	,	계 기타이월금 한도 초과 현황"과 같이	
	2018회계약	년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등록금회계 기타	
	이월금 현	도 보다 적게는 1,535,766천원에서 많게는	
	2,281,080	헌원을 초과하여 이월한 사실이 있음	

【붙임1】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 부적정 처리 현황

(단위: 천원)

항목		회계연도	합 계	비고	
9 -	2018	2019	2020	합 계	1112
부적정 처리 금액	2,068,096	2,769,423	89,000	4,926,519	

【붙임2】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 한도 초과 현황

(단위: 천원)

항목		비고		
왕숙 	2018	2019	2020	1 1/1/L
기타이월금 (A: 명시 및 사고이월 처리액)	2,068,096	2,769,423	89,000	
기타이월금 (B: 자체 처리액)	550,696	149,445	2,101,141	
실제 기타이월금 합계 (A+B)	2,618,792	2,918,868	2,190,141	
기타이월금 한도	634,984	637,788	654,375	
(수입총액 대비 한도율)	(1.0%)	(1.0%)	(1.0%)	
한도 초과액	1,983,808	2,281,080	1,535,766	
(수입총액 대비 실제비율)	(3.1%)	(3.5%)	(2.3%)	

○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 한도

(단위:천원)

항목		비고		
% न	2018	2019	2020	H <u>1</u> 2
등록금회계 운영수입	63,498,418	63,778,807	65,437,516	
기타이월금 한도율	1.0%	1.0%	1.0%	
한도	634,984	637,788	654,375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26	특정목적 적립금 관리 부적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ㅇ경고(3명)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ㅇ통보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사립학교법」	세부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등 관련
	제32조의2 제2항에는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	하기 바람
	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	
	한다고 되어 있고, 2016.12.27. 교육부에서 특정목적	
	적립금은 구체적인 목적 및 대상, 용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추상적이고 용도가 불분명한 기금은 조성	
	할 수 없으며, '17회계연도부터 새로 적립하는 경우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고 기존 기타적립금은 '17회계	
	연도 내에 '특정목적 적립금'으로 전환 또는 사용하고	
	특정목적 적립금(목) 내에 세부 목적기금(세목)을 계상	
	할 것을 각 대학에 통보*하였는데도,	
	*「사립학교법」(제32조의2) 일부 개정법률 공포로 특정목적 적립금 시행 알림 (사립대학제도과-14306, 2016.12.27.)	
	- 중부대학교는 학교발전기금 500,000천원을 2020회계	
	연도에 임의특정목적 기금으로 적립하면서 세부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적립한 사실이 있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27	교비회계 집행 부적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 및 제21조 제2항에	○경고(3명)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ㅇ통보
	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 . ,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없이 집행한 법인키드 사용액 14,356,190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	원에 대해 정신하고
	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지추으 과러자리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사립대학(법인)	부터 회수하여 교비
	회계관리 안내서(사립대학정책과-645, 2017.1.17.)」에 따르면	, , , , , , , , , , , , , , , , , , , ,
	예산집행은 집행품의 및 결재, 지출원인행위, 지급명령,	하기 바람
	지급으로 이루어지고, 업무추진비 등 기타비용 집행시	
	유의사항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용도로의 집행은	
	불가하며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 중부대학교는 2020.1.3. AG가 ♣♣에서 60천원을 법인	
	카드로 사용한 뒤 업무 관련 객관적 증빙 없이 법인	
	카드 내역만 첨부하였음에도 교비회계로 집행 하는	
	등 【붙임】 "객관적 증빙 없는 법인카드 사용현황"과	
	같이 2019.3.부터 2021.2.까지 위 AG 등 교직원 총	
	13명이 합계 14,356,190원을 업무 관련 객관적 증빙	
	없이 법인카드 내역만 첨부하였음에도 교비회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법인카드 사용액 교비회계(잡손실) 처리 현황

(단위:원)

연 —	법인카.	트					
	사용지	}-	지출일	지출시간	사용처	지출명	지출액
번	직위	성명					
1	-	AG	2020-01-03(금)	10:44:21	-	식대	60,000
2	-	AG	2020-01-22(수)	9:16:08	-	식대	47,600
3	-	-	2021-02-09(화)	17:38:50	-	식대	53,000
4	-	-	2019-12-02(월)	14:36:48	-	인쇄비	25,000
5	_	-	2019-12-03(화)	12:34:39	-	식대	257,400
6	_	_	2020-01-22(수)	18:02:48	-	인쇄비	1,870,000
7	_	_	2020-01-23(목)	10:29:05	-	식대	90,100
8	_	_	2019-05-13(월)	12:54:49	-	식대	158,000
9	_	_	2019-05-13(월)	15:26:59	-	식대	6,000
			. ,			식대	
10	-	-	2019-05-13(월)	15:27:26	-	-	9,000
11	-	-	2019-05-13(월)	15:34:44	-	식대	27,000
12	-	-	2019-05-13(월)	15:37:42	-	식대	3,000
13	-	-	2021-01-22(금)	16:01:00	-	수업용품	397,000
14	_	-	2019-05-08(수)	12:31:50	-	식대	32,000
15	-	-	2019-05-08(수)	19:09:46	-	식대	98,000
16	-	-	2019-05-20(월)	17:27:46	-	식대	142,000
17	-	-	2019-05-27(월)	11:56:42	-	인쇄비	30,000
18	-	-	2019-06-11(화)	13:00:49	-	사무용품	40,000
19	-	-	2019-07-22(월)	12:00:14	-	행사용품	43,280
20	-	-	2019-07-23(화)	13:53:00	-	인쇄비	1,694,000
			<중 략>				
121	-	-	2020-12-08(화)	11:41:55	-	기념품	96,000
122	-	-	2019-06-07(금)	9:29:47	-	교통비	79,900
123	-	-	2019-09-24(화)	18:21:35	-	숙박비	550,000
124	-	-	2019-09-25(수)	13:47:09	-	현수막	77,000
125	-	-	2019-09-25(수)	17:53:16	-	교통비	50,000
126	-	-	2020-06-30(화)	17:51:28	-	숙박비	50,000
127	-	-	2020-12-24(목)	12:34:26	-	식대	22,000
128	-	-	2019-12-30(월)	10:33:42	-	우편요금	5,500
129	-	-	2019-12-31(화)	13:12:20	-	식대	32,000
130	-	-	2020-01-10(금)	11:37:15	-	식대	30,500
131	-	-	2020-01-13(월)	12:27:42	-	식대	16,000
132	-	_	2020-01-16(목)	12:27:00	-	식대	11,000
133	-	R	2019-06-14(금)	7:56:12	-	식대	20,000
134	-	R	2019-06-14(금)	7:57:17	-	식대	20,000
135	-	R	2019-11-22(금)	11:50:03	-	행사비	700,000
136	-	R	2020-04-11(토)	18:12:04	-	식대	34,000
137	-	R	2021-02-09(화)	17:20:18	-	우편요금	7,820
138	-	R	2021-02-19(토)	99,000	-	기념품	99,000
139	-	_	2019-11-01(금)	11:03:57	-	행사용품	13,900
140			2019-11-01(금)	21:02:35		행사용품	1,700
			합 :	 계			14,356,19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안)
28	교육용기본재산 임대료 징수 부적정	
		○ 경고(3명) ○시정(회수) - 미징수된 임대료 합계 14,750천원을 AH 등 관련 입 주자로부터 희수하 여 교비회계에

임대료 미징수 현황

(단위:원)

					I	ı	T
연 번	상 호	임차인	위치	면적	미납월	금 액	비고
1	-	AH	-	63.23 m²	2018.09.	770,000	충청캠퍼스
2	-	AH	-	63.23 m²	2018.10.	770,000	충청캠퍼스
3	-	AH	-	63.23 m²	2018.11.	770,000	충청캠퍼스
4	-	AH	-	63.23 m²	2018.12.	770,000	충청캠퍼스
5	-	AH	-	63.23 m²	2019.02.	770,000	충청캠퍼스
6	-	AH	-	63.23 m²	2019.03.	770,000	충청캠퍼스
7	-	AH	-	63.23 m²	2019.04.	770,000	충청캠퍼스
8	-	AH	-	63.23 m²	2019.05.	770,000	충청캠퍼스
9	-	AH	-	63.23 m²	2019.06.	770,000	충청캠퍼스
10	-	AH	-	63.23 m²	2019.08.	770,000	충청캠퍼스
11	-	AH	-	63.23 m²	2019.09.	770,000	충청캠퍼스
12	-	AH	-	63.23 m²	2019.10.	770,000	충청캠퍼스
13	-	AH	-	63.23 m²	2019.11.	770,000	충청캠퍼스
14	-	AH	-	63.23 m²	2019.12.	770,000	충청캠퍼스
15	-	AH	-	63.23 m²	2020.02.	770,000	충청캠퍼스
		3	는 계			11,550,000	
16	-	-	-	84.24 m²	2018.03.	200,000	고양캠퍼스
17	-	-	-	84.24 m²	2018.04.	200,000	고양캠퍼스
18	-	-	-	84.24 m²	2018.05.	200,000	고양캠퍼스
19	-	-	-	84.24 m²	2018.06.	200,000	고양캠퍼스
20	-	-	-	84.24 m²	2018.09.	200,000	고양캠퍼스
21	-	-	-	84.24 m²	2018.10.	200,000	고양캠퍼스
22	-	-	-	84.24 m²	2018.11.	200,000	고양캠퍼스
23	-	-	-	84.24 m²	2018.12.	200,000	고양캠퍼스
24	-	-	-	84.24 m²	2019.03.	200,000	고양캠퍼스
25	-	-	-	84.24 m²	2019.04.	200,000	고양캠퍼스
26	-	-	-	84.24 m²	2019.05.	200,000	고양캠퍼스
27	-	-	-	84.24 m²	2019.06.	200,000	고양캠퍼스
28	-	-	-	84.24 m²	2019.09.	200,000	고양캠퍼스
29	-	-	-	84.24 m²	2019.10.	200,000	고양캠퍼스
30	-	-	-	84.24 m²	2019.11.	200,000	고양캠퍼스
31	-	-	-	84.24 m²	2019.12.	200,000	고양캠퍼스
소 계					3,200,000		
	합 계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29	유형자산 회계처리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 경고(3명)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의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 재무상태가 적정	
	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여야 하며,	
	제34조에 따르면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고,「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2항에 따르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	
	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의 복구, 그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상기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중부대학교는 2018.4.6. '고양캠퍼스 시설공사 설계비	
	(기성금 50%)'가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 등을 증가시킴에도	
	자산으로 회계처리(자본적 지출)하지 않고 시설관리비로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회계 처리하는 등【붙임1】 "유형자산 회계처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3.부터 2021.4 감사일 현재까지 총	
	41건의 공사(공사대금 합계 3,919,593천원)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등을 증가시킴에도 자산으로 회계처리 않고	
	시설관리비(당기비용)로 회계처리 하였고, 이와 같은 회계	
	처리 결과 2018년 교육비환원율*은 실제 146.11%임에도	
	4.39% 초과한 150.50%로 산정되는 등 【붙임2】"교육비	
	환원율 과다 산정 현황"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19년도	
	까지 교육비환원율이 적게는 0.09%에서 많게는	
	4.39%까지 과다 산정된 사실이 있음	
	※ 교육비 환원율 : 총교육비* / 등록금수입총액	
	* 총교육비 : 교비회계 교육비(보수+관리운영비+도서구입비+기계· 기구매입비-연구학생경비 중 입시관리비) + 산학협력단 회계 교육비(산학협력비+지원금사업비+간접비사업비+ 일반관리비+기계·기구 취득비)	

【붙임1】

유형자산 회계처리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지출일	적요	금액
1	2018-04-06	고양캠퍼스 시설공사 설계비(기성금 50%)	9,000,000
2	2018-07-20	고양캠퍼스 공동구 시설공사(기성2회)	155,230,000
3	2018-07-20	고양캠퍼스 교육환경 개선공사(기성2회)	495,420,000
4	2018-07-20	실습동 공사 설계비(50%)	7,000,000
5	2018-08-17	고양캠 교육환경 개선공사 기성(3회)	274,970,000
6	2018-08-17	고양캠퍼스 공동구 시설공사	141,860,000
7	2018-09-19	고양캠퍼스 실습동&체육시설 환경개선 시설공사(기성1회)	71,390,000
8	2018-12-21	고양캠퍼스 공원부지 차광막설치	9,400,000
9	2018-12-21	고양캠퍼스 현수막게시대 설치	9,300,000
10	2018-12-21	고양캠퍼스 토지경계선 조경시설공사	13,520,000
11	2018-12-21	고양캠퍼스 옥외 휴게공간(공원)조성공사	18,000,000
12	2018-12-28	고양캠퍼스 교육환경개선공사 토목,조경(준공금)	811,453,000
13	2018-12-28	고양캠퍼스 교육환경개선 전기공사(준공금)	24,041,600
14	2018-12-28	고양캠퍼스 공동구 시설공사(준공금)	28,220,000
15	2018-12-28	고양캠퍼스 실습동,체육시설 환경개선 전기외(준공금)	15,975,127
16	2018-12-28	공동구 설계 등 용역비(잔금10%)	1,800,000
17	2018-12-28	실습동 설계비 잔금(10%)	1,400,000
18	2019-02-22	헬스케어라운지 실내건축	86,700,000
19	2019-02-22	헬스케어라운지 존 전기공사	14,960,000
20	2019-02-22	헬스케어라운지 존 소방시설공사	3,300,000
21	2019-02-27	헬스케어라운지존 회의실구축	22,000,000
22	2019-02-27	헬스케어라운지존 회의실 전기공사	6,400,000
23	2019-02-27	헬스케어라운지 존 회의실 소방작업	2,750,000
24	2019-02-28	공사대금	542,345,000
		소 계	2,766,434,727
25	2020-02-28	행정용 화상회의시스템 구축공사	22,000,000
26	2020-02-28	ICT전산실습실 화상강의시스템 구축공사	24,251,700
27	2020-02-28	PBL스마트강의실 화상회의시스템 구축공사	24,251,700
28	2020-02-28	충청캠ICT,PBL 수업공간 환경개선	57,700,000
		소 계	128,203,400
29	2020-12-24	(혁신)고양캠퍼스 휴게시설(인농관/수경재)구축 선급금(30%)	45,000,000
30	2021-01-29	고양캠퍼스 우수관로 공사 선급금(30%)	44,610,000
31	2021-02-05	고양캠퍼스 인농관, 수경재 휴게시설 실내건축공사	105,000,000
32	2021-02-25	경복관 건물 수선공사	136,720,000
33	2021-02-25	일시가지급금 대체(고양캠퍼스 휴게시설 전기공사)	25,000,000
34	2021-02-25	경복관 건물수선공사 준공금(50%-법정경비 정산)	92,755,000
35	2021-02-25	경복관 냉난방 구축공사	69,000,000
36	2021-02-25	일시가지급금 대체(대학혁신_고양캠퍼스 휴게시설 공사비)	77,000,000
37	2021-02-25	세종관(도서관)환경개선 전기공사비	20,000,000
38	2021-02-26	고양캠퍼스 우수관로 공사 잔금(70%)	104,090,000
39	2021-02-26	세종관 도서관 실내건축공사 잔금(70%)	154,000,000
40	2021-02-28	공사대금	63,780,000
41	2021-02-28	공사대금	88,000,000
		소 계	1,024,955,000
		합 계	3,919,593,127

【붙임2】

교육비 환원율 과다 산정 현황

(단위: 천원)

	등록금 수입총액	기존		자본적지출로	교육비	
회계연도		총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총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환원율 증감
2018	61,412,901	92,428,147	150.50%	89,730,873	146.11%	△4.39%
2019	60,991,812	90,357,624	148.15%	90,301,786	148.06%	△0.09%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0	교내연구비 수령 부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① 내지 ⑤ 관련>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 경고(4명)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ㅇ통보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연구윤리확보를	- 지급된 연구비 합계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제5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44,627천원을 규정 에 따라 검토 후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자신	부당하게 지급된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연구비는 연구자들 로부터 각각 회수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 및 존중하여야	
	하고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기여해야 하며,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 된 모든	<① 관련>
	이해관계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중부대학교 연구	ㅇ경징계(2명)
	윤리규정」 제5조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중 "부당한	○ 경고(1명)
	중복게재"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①, ③ 관련>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	○ 경징계(1명)
	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	
	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뜻한다고	<② 관련>
	되어 있으며,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	ㅇ경고(9명)
	관계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중부대학교 교내	\ \\ \tau \tau \\
	연구비 운영지침*(2018.01.11., '18~'20)」에 따르면 연구	○ 경고(2명)
	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연구	
	수행을 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물로 논문은 한국연구	<④ 관련>
	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이거나 SCOPUS, SCI급 이상	ㅇゟ고(2명)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인정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과제를 이미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와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자격이 제한되며	
	본 지침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중부대학교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원연구지원에 관한 지침 (2019.3.21.)」,「중부대학교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원연구지 원에 관한 지침(2020.4.14.)」	
	【제자논문 요약본 교내연구비 결과물 제출에 관한 사항】… ①	
	- 중부대학교 AI은 2016.1월 발표된 AJ의 석사학위논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2018.6월 학술연구진흥비를 신청(연구	
	기간 : 2018. 7. 1. ~ 2018. 10. 15.)한 후, 2018. 11. 16. 학술	
	연구진흥비 660천원을 지원받고 위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	
	(석사학위 논문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7page로 정리)	
	하여 2018년 ㅋ학회지에 같은 제목으로 게재(제1저자 AJ,	
	교신저자 AI)하고, 2018.10월 학술연구진흥비 연구성과물	
	로 제출하는 등 【붙임1】 "제자논문 요약본 교내연구비	
	결과물 제출 현황"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위 AI 등 교수 3명은 제자 6명의 학위논문 6건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제목으로 학술연구진흥비를 신청하고 동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학술지에 게재 후 학술연구진흥비	
	연구성과물로 제출하고 연구비 합계 5,227천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음	
	【연구결과물 지원기관 미표시에 관한 사항】 ②	
	- 중부대학교는 AK이 2018학년도에 교내연구비(연구기간:	
	2018. 3. 1. ~ 2019. 2. 28., 지원액: 3,500천원)의 연구결과물에	
	지원기관 표기 없이 학술지(단독저자 AK)에 게재하는 등	
	【붙임2】"연구결과물 지원기관 표기 부적정 현황"과	
	같이 '18학년도부터 '19학년도까지 위 AK 등 9명이	
	교내연구비(합계 30,900천원)의 연구결과물(13건)에 지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기관 표기를 생략하거나 이중으로 지원기관을 표기	
	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음	
	【연구결과물 학술지 게재에 관한 사항】 ③	
	- 중부대학교는 AL가 2018학년도에 교내연구비(연구기간	
	2018. 5. 1. ~ 2019. 2. 28., 지원액: 1,750천원)의 연구결과물	
	을 SCOPUS, SCI급 이상 학술지에 인정되지 않는	
	'ㅌ'에 게재하는 등 【붙임3】"기준 미달 학술지 연구	
	결과물 등재 현황"과 같이 '18학년도부터 '20학년도	
	까지 위 AL 등 3명이 교내연구비(합계 5,500천원)의 연구	
	결과물을 ☆☆ 등재후보지 이상 등에 인정되지 않는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음	
	【연구결과물 미제출에 관한 사항】 ④	
	- 중부대학교 AM은 2018. 2. 28. 교내연구비(연구기간: 2018.	
	2.28. ~ 2019. 2. 28.) 2,000천원을 지급 받은 후 연구결과물	
	제출기한('20. 2. 28.) 보다 1년이 지난 2021. 4월 감사일 현재	
	까지도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붙임4】"연구	
	결과물 미제출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에 위 AM 등 2	
	명은 교내연구비 2건 합계 3,000천원을 지급 받은 후	
	연구 결과물의 제출기한이 경과하였는데도 2021.4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붙임1】

제자논문 요약본 교내연구비 결과물 제출 현황

(단위 : 천원)

		힉	위논문 제출 현황					학술지 등재 현	년 황				연구과제	선정		
연번	학과	성명	학위 논문명	인준일	지도 교수명	제1저자	교신 저자	연구과제명 (교내연구비)	학술지	세부 등록사항	계획서 제출일	연구기간	연구과제 선정일	최종 지원일	지원 금액	성과물 제출일
1	-	AJ	-	2016.01	AI	AJ	AI	-	ㅋ학회지	-	2018.06	2018.07.01~ 2018.10.15	2018.07.20	2018.11.16	660	2018.10.15
2	-	-	-	2016.01	AI	-	AI	-	-	-	2018.06	2018.07.01.~ 2018.10.15	2018.07.20	2018.11.16	800	2018.10.15
3	-	-	-	2018.02	AI	-	AI	-	-	-	2018.06	2018.07.01.~ 2019.03.14	2018.07.20	2018.11.16	1,000	2019.03.14
4	-	-	-	2017.12	AI	-	AI	-	-	-	2019.03	2019.04.01. ~2019.10.22	2019.05.09	2019.05.16	800	2019.10.22
5	-	-	-	2016.12	Z	-	Z	-	-	-	2018.03	2018.04.01 ~2019.01.25	2018.04.16	2018.04.27	800 400	2019.02.11
6	-	-	-	2017.08	-	-	-	-	-	-	2018.04.30	2018.05.01 ~2019.12.27	2018.05.14	2018.11.16	1,167	2020.02.27
			합 계												5,227	

【붙임2】

연구결과물 지원기관 표기 부적정 현황

(단위: 천원)

연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게재학술지 추가)	연구기간	결과물	연구	구비 구비	지원기관
번	<u> </u>	প্র	6.8	현무관세정(계세획출시 구기)	한무기선	게재일	지원액	지급일	표기 여부
1	-	-	AK	-	2018.03.01.~ 2019.02.28	2019.01.18	3,500	2018.03.30	미표기
2	-	-	AK	-	2018.03.01.~ 2019.02.28	2019.02.14	3,500	2018.03.30	미표기
3	-	-	AK	-	2018.03.01.~ 2019.02.28	2018.10.25	3,500	2018.03.30	미표기
4	-	-	AK	-	2018.03.01.~ 2019.02.28	2019.02.25	2,000	2018.03.30	미표기
5	-	-	AK	-	2018.03.01.~ 2019.02.28	2018.10.25	3,500	2018.03.30	미표기
6	-	-	-	-	2018.04.01.~ 2019.02.28	2018.11.30	3,500	2018.04.27	미표기
7	-	-	-	-	2018.04.01.~ 2019.02.28	2019.03.25	1,000	2018.04.27	미표기
8	-	-	-	-	2018.03.01.~ 2019.02.28	2019.02.12	2,000	2018.03.30	미표기
9	-	-	-	-	2018.03.01.~ 2019.02.28	2019.01.25	2,000	2018.03.30	미표기
10	-	-	-	-	2018.04.01.~ 2019.02.28	2019.02.11	2,000	2018.04.27	미표기

연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게재학술지 추가)	연구기간	결과물	연구	7 비]	지원기관
번	3.5	ЭВ	8 8	교 (최세종(세세력 출시 구기)	U / W	게재일	지원액	지급일	표기 여부
11	1	-	-	-	2018.05.01.~ 2019.02.28	2018.09.14	2,000	2018.11.16	미표기
12	1	-	1	-	2019.03.01.~ 2020.02.28	2019.06.30	1,600	2019.05.02	미표기
13	-	-	ı	-	2019.03.01.~ 2020.02.28	2019.08.01	800	2019.05.02	타(기관(연구비 지원과제 (지원기관 이중표기)
				합 계			32,900		

【붙임3】

기준 미달 학술지 연구결과물 등재 현황

(단위: 천원)

연	, .	-J) -J	אווי	시크레네네	47-17		연구비		-기-기관 소)	결과물	그모니만 원소리 기소
번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지원액	지급일	未회수액	게재학술지	게재일	기준미달 학술지 사유
1	-	-	AL	-	2018.05.01.~ 2019.02.28	1,750	2018.11.16	1,750	-	2018.08.06	-
2	-	-	-	-	2019.04.01.~ 2020.02.28	2,500	2019.05.16	2,500	-	2020.03.30	국제일반학술지
3	-	-	-	-	2019.05.01.~ 2020.02.28	1,250	2019.06.21	1,250	-	2019.10.09	국제일반학술지
				합계		5,500		5,500			

【붙임4】

연구결과물 미제출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신청일	지급일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지급액		
1	2018.02.28	2018.03.30	-	-	AM	-	2018.03.01. ~2019.02.28	2,000		
2	2018.03.31	2018.04.27	-	-	-	-	2018.04.01. ~2019.02.28	1,000		
	합계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31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액 연구비 미반납 부적정	
		○ 경고(2명) ○ 통보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액 합계 90,497, 495원을 26개 지원 기관에 각각 반납 조치하기 바람
	각 연구과제의 지원 연구비 종액에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액(매입부가가치세)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합계 90,497,495원(부가가치세 환급대상액 X 1.1)을 26개 지원기관에 반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액 연구비 미반납 현황

(단위 : 원)

연번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과제명	연구기간	정산구분	연구비 집행 총액 (A1 =B1+C1) (A2 =B2+C2)	실제 연구비 (B1=A1-C1) (B2=B1-D)	부가가치세 (C1=A1/11) (C2=A2/11)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액 (매입부가가치세액) (D)	반납 대상액 (A1-A2)
1		434	••	<u>JI</u>	2016.04.25.	기정산 내역	241,598,162	219,634,525	21,963,637	-	7 500 701
1	-	AM		γ_T	2016.11.30.	재정산 내역	233,998,461	212,725,874	21,272,587	6,908,651	7,599,701
					2016.04.25.	기정산 내역	117,012,838	106,103,747	10,909,091	-	1 200 =1 (
2	-	-	-	-	201.03.14.	재정산 내역	115,714,122	105,194,656	10,519,466	909,091	1,298,716
					2016.05.19.	기정산 내역	29,748,430	27,021,157	2,727,273	-	2(0.140
3	-	-	-	-	2016.11.18.	재정산 내역	29,479,285	26,799,355	2,679,936	221,802	269,140
					2016.08.01.	기정산 내역	44,000,000	40,000,000	4,000,000	-	221 277
$\begin{array}{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	-	-	-	2016.12.31.	재정산 내역	43,668,123	39,698,294	3,969,829	301,706	331,877
_					2016.11.01.	기정산 내역	63,519,210	57,560,210	5,959,000	-	
5	-	-	-	-	2017.10.31.	재정산 내역	62,049,270	56,408,427	5,640,843	1,151,783	1,469,940
					2016.12.15.	기정산 내역	18,200,000	16,380,000	1,820,000	-	1 100 000
6	-	-	-	-	2017.02.03.	재정산 내역	17,018,000	15,470,910	1,547,090	909,090	1,182,000
7					2017.03.30.	기정산 내역	18,999,800	17,272,528	1,727,272	-	F01 0 17
'	-	-	-	-	2017.10.30.	재정산 내역	18,418,583	16,744,166	1,674,417	528,362	581,217
					2017.04.13.	기정산 내역	93,142,320	84,674,837	8,467,483	-	
8	-	-	-	-	2017.11.30.	재정산 내역	89,727,809	81,570,735	8,157,074	3,104,102	3,414,512
					217.04.17.	기정산 내역	60,000,000	54,545,455	5,454,545	-	460,000
9	-	_	-	-	2017.12.31.	재정산 내역	59,536,001	54,123,637	5,412,364	421,818	463,999

연번	연구책약	임자	지원기관	과제명	연구기간	정산구분	연구비 집행 총액 (A1 =B1+C1) (A2 =B2+C2)	실제 연구비 (B1=A1-C1) (B2=B1-D)	부가가치세 (C1=A1/11) (C2=A2/11)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액 (매입부가가치세액) (D)	반납 대상액 (A1-A2)
40					2017.05.08.	기정산 내역	24,144,000	21,949,091	2,194,909	-	440.550
10	-	-	-	-	2017.10.04.	재정산 내역	23,730,428	21,573,116	2,157,312	375,975	413,572
					2017.08.01.	기정산 내역	44,424,000	40,385,455	4,038,545	-	4 =00 000
11	-	-	-	-	2017.12.31.	재정산 내역	42,724,000	38,840,000	3,884,000	1,545,455	1,700,000
12		_			2017.09.14.~	기정산 내역	20,000,000	18,236,362	1,763,638	-	910,003
12	-	_	-	-	2017.12.08.	재정산 내역	19,089,997	17,354,543	1,735,454	881,819	910,003
12					2017.10.11.	기정산 내역	49,000,000	44,537,150	4,462,850	-	257,005
13	-	-	-	-	2018.06.30.	재정산 내역	48,643,995	44,221,814	4,422,181	315,336	356,005
					2017.11.27.	기정산 내역	11,520,000	10,368,000	1,152,000	-	
14	-	-	-	-	2017.12.15.	재정산 내역	11,254,801	10,231,637	1,023,164	136,363	265,199
					2017.12.12.	기정산 내역	20,000,000	18,181,818	1,818,182	-	
15		-	-	-	2018.01.31.	재정산 내역	18,900,000	17,181,818	1,718,182	1,000,000	1,100,000
					2019.03.25.~	기정산 내역	70,000,000	63,636,364	6,363,636	-	
16	-	-	-	-	2019.11.30.	재정산 내역	69,333,414	63,030,376	6,303,038	605,988	666,586
					2018.06.01.~	기정산 내역	22,854,600	20,672,600	2,182,000	-	
17	-	-	-	-	2018.12.10.	재정산 내역	22,569,360	20,517,600	2,051,760	155,000	285,240
10					2020.08.20.~	기정산 내역	16,477,400	14,659,218	1,818,182	-	1 010 045
18	-	-	-	-	2020.11.30.	재정산 내역	15,458,553	14,053,230	1,405,323	605,988	1,018,847
19		_			2018.04.09.~	기정산 내역	9,900,000	9,000,000	900,000	-	235,160
17		_	_	<u>-</u>	2018.05.31.	재정산 내역	9,664,840	8,786,218	878,622	213,782	233,100
20					2019.09.02.~	기정산 내역	70,275,724	63,882,868	6,392,856	-	2 240 442
20	-	-	-	-	2020.03.31.	재정산 내역	68,026,283	61,842,075	6,184,208	2,040,793	2,249,442

연번	연구책임	임자	지원기관	과제명	연구기간	정산구분	연구비 집행 총액 (A1= B1+C1) (A2= B2+C2)	실제 연구비 (B1=A1-C1) (B2=B1-D)	부가가치세 (C1=A1/11) (C2=A2/11)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액 (매입부가가치세액) (D)	반납 대상액 (A1-A2)
21	_		_	_	2020.06.17.~	기정산 내역	66,433,345	60,393,950	6,039,395	-	2,477,156
21	_	-	_	_	2020.11.30.	재정산 내역	63,956,189	58,141,990	5,814,199	2,251,960	2,477,130
22		v			2020.04.29.~	기정산 내역	36,000,000	32,727,272	3,272,728	-	224 400
22	-	X	-	-	2020.11.30.	재정산 내역	35,665,520	32,423,200	3,242,320	304,072	334,480
23	_	-	_	_	2018.07.05.~	기정산 내역	199,000,000	180,909,091	18,090,909	-	11,387,486
23					2018.12.31.	재정산 내역	187,612,514	170,556,831	17,055,683	10,352,260	11,507,400
					2019.05.01.~	기정산 내역	197,163,381	179,239,434	17,923,947	-	
24	-	-	-	-	2019.12.31.	재정산 내역	184,542,479	167,765,890	16,776,589	11,473,544	12,620,902
					2019.09.10.~	기정산 내역	14,800,000	13,454,545	1,345,455	-	
25	-	-	-	-	2019.11.15.	재정산 내역	14,700,000	13,363,636	1,336,364	90,909	100,000
26	_		_	_	2020.05.18.~	기정산 내역	30,000,000	27,272,727	2,727,273	-	198,092
20	-	-	-	-	2020.11.17.	재정산 내역	29,801,908	27,092,644	2,709,264	180,083	170,072
					2018.05.08.~	기정산 내역	179,003,934	162,731,206	16,272,728	-	
27		X	-	-	2018.11.30.	재정산 내역	171,693,991	156,085,446	15,608,545	6,645,760	7,309,943
					2019.06.04.~	기정산 내역	1,700,000,000	1,545,454,545	154,545,455	-	
28	-	X	-	-	2019.12.20.	재정산 내역	1,685,166,492	1,531,969,538	153,196,954	13,485,007	14,833,508
29	_	Х	_	_	2020.03.17.~	기정산 내역	68,500,000	62,272,727	6,227,273	-	875,497
		, ,			2020.11.13.	재정산 내역	67,624,503	61,476,821	6,147,682	795,906	0,0,177
30	-	-	-	-	2018.03.14.~	기정산 내역	29,999,990	27,272,990	2,727,000		471,949
					2018.11.30. 2019.03.27.~	재정산 내역 기정산 내역	29,528,041 45,000,000	26,843,674 40,909,090	2,684,367 4,090,910	429,316	
31	-	-	-	-	2019.03.27.~ 2019.08.30.	재정산 내역	45,000,000	40,743,362	4,090,910		182,302

연번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과제명	연구기간	정산구분	연구비 집행 총액 (A1 =B1+C1) (A2 =B2+C2)	실제 연구비 (B1=A1-C1) (B2=B1-D)	부가가치세 (C1=A1/11) (C2=A2/11)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액 (매입부가가치세액) (D)	반납 대상액 (A1-A2)
32	-	-	-	-	2018.01.01.~ 2018.11.30.	재정산 내역	223,125,000 221,025,003	202,840,912 200,931,821	20,284,088 20,093,182	- 1,909,091	2,099,997
33	-	-	-	-	2018.03.28.~ 2018.11.30.	기정산 내역 재정산 내역	30,000,000 28,867,288	27,272,729 26,242,989	2,727,271 2,624,299	1,029,740	1,132,712
34	-	-	-	-	2019.09.23.~ 2020.01.03.	기정산 내역 재정산 내역	26,620,000 26,204,718	24,200,000 23,822,471	2,420,000 2,382,247	- 377,529	415,282
35	-	-	-	-	2019.04.29.~ 2019.09.26.	기정산 내역 재정산 내역	19,770,000 19,560,001	17,972,727 17,781,819	1,797,273 1,778,182	190,908	209,999
36					2020.08.10.~	기정산 내역	7,132,682,423	6,484,256,748	648,425,675	-	2,750,886
36	-	-	-	-	2020.12.31.	재정산 내역	7,129,931,537	6,481,755,943	648,175,594	2,500,805	2,730,000
37	-	X	-	-	2020.10.12.~ 2020.11.27.	기정산 내역 재정산 내역	20,460,000 20,210,000	18,600,000 18,372,727	1,860,000 1,837,273	- 227,273	250,000
38	-	-	-	-	2018.04.16.~ 2019.02.09.	기정산 내역 재정산 내역	64,160,700 63,182,221	58,327,909 57,438,383	5,832,791 5,743,838	-	978,479
						기정산 내역	44,692,764	40,629,785	4,062,979	-	
39		-	-	-	2020.06.10.~ 2021.01.05.	재정산 내역	43,622,489	39,656,808	3,965,681	972,977	1,070,275
40		A IZ			2018.05.01.~	기정산 내역	55,000,000	50,000,000	5,000,000	-	1 005 070
40	-	AK	-	-	2019.04.30.	재정산 내역	53,174,140	48,340,127	4,834,013	1,659,873	1,825,860
					2018.03.01.~	기정산 내역	107,081,683	97,331,683	9,750,000	-	
41	-	-	-	-	2019.12.31.	재정산 내역	105,484,999	95,895,454	9,589,545	1,436,229	1,596,684
42					2019.04.12.~	기정산 내역	40,000,000	36,363,636	3,636,364	-	1,216,050
42	-	-	-	-	2019.10.31.	재정산 내역	38,783,950	35,258,136	3,525,814	1,105,500	1,210,030
43	_		_	_	2019.11.06.~	기정산 내역	46,079,000	41,890,000	4,189,000	-	348,800
13	-	_	-		2019.12.31.	재정산 내역	45,730,200	41,572,909	4,157,291	317,091	J 1 0,000
						기정산 내역	11,420,388,704	10,381,025,091	1,039,363,613	-	00 407 405
						재정산 내역	11,329,891,206	10,299,901,100	1,029,990,112	81,123,991	90,497,495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3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미반납 부적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고(1명)
	제27조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ㅇ통보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규정」 제13조에는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성실,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며, 「동 규정」 제18조에는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통고가 있는 경우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도,	5,658,203원을 관련 자로 부터 화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 하기 바람
	- 중부대학교 AK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한 'ㅎ' 연구과제('17.11.1.~'19.10.31.)의 정산 결과 개인별 연구 수당 과다 지급 등의 사유로 6,558,203원을 반납토록 통보*('19.5.29.) 받고도 900,000원만 반납하고 '21.4월 감사일 현재까지 5,658,203원을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에 반납대상전액(6,558,203원) 기반납	

【참고】

연구비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의 미반납 현황

(단위: 원)

	반납		반환내역			
불인정 항목	대상액 (A)	해당연구기간	대상자	반 환 액 (B)	미반환액 (A-B)	반환사유
연구수당	2,551,503	1차년도 ('17. 11. 1. ~ ′18. 10. 31.)	AK	900,000	1,651,503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50%(상한규정)를 초과하여 지급한 개인별 연구수당
연구환경 유지기기 및 비품	4,006,700	2차년도 ('18. 11. 1. ~ ′19. 10. 31.)	AK	-	4,006,700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기 및 비품 구입
합계	6,558,203			900,000	5,658,203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3	참여연구원 기여도 미평가 및 연구수당 초과 수령	
	○「舊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ㅇ경고(1명)
	관련 별표 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면 연구	ㅇ통보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_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u></u> 의수하여 규정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별 연구	에 맞게 기여도평
	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 기 서그 사다 이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과려자에게 재지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야기 마님
	처리규정」 제22조 관련 별표 3(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단, 연구책임자 단독 과제일 경우 해당되지	
	않음)고 되어 있는데도,	
	- 중부대학교 AN은 2019.3.1.부터 "ㄲ(지원기관 : ☆☆,	
	연구기간 : 2019. 3. 1. ~ 2020. 2. 29. 연구비 : 50,000천원)"과제를	
	수행하면서 본인에게 연구수당 상한 기준(9,475,200원)	
	보다 1,353,600원을 초과 수령한 사실이 있음	

기여도 미평가 및 연구수당 초과 수령 현황

(단위 : 원)

연구최	백임자	어크리 케터	الحارة إذا	 관 연구비	 구비 연구기간 ├	연구원 현황		기여도	연구수당	수령상한액	초과
성명	소속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선수미	선구미 연구기간		구분	평가	수령내역	(소계의 70% 기준)	수령액
						AN	-	80%	10,828,800	9,475,200	1,353,600
AN	-	דד	☆ ☆	50,000,000	2019-03-01~ 2020-02-29	-	-	20%	2,707,200	재평가 후 조정	-
						소	:계	-	13,536,000	-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4	물품 용역 구매 절차 부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ㅇ경징계(4명)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ㅇ주의(11명)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	
	여서는 아니 되고, 「동 규칙」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전문	
	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중부대학교 구매업무규정」제4조에 따르면 물품 구매 시	
	해당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에 대하여 해당 부서는	
	물품 구매 요청을 결재하고 이에 따라 담당부서는 발주를	
	하며 해당 물품 등의 입고에 따른 검수는 해당 물품의	
	실무 담당자가 별도양식의 검수조서를 작성 및 실제	
	수요 부서의 팀장이상이 최종 확인 후 지출결의를 진행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중부대학교 AO은 2018년 본인이 담당하는 'ㄸ' 연구	
	용역과제와 관련하여 일반경쟁계약 대상인 'ㅃ'용역을	
	구매요청 없이 본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납품 받은	
	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만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였고	
	산학협력단은 이를 근거로 발주, 계약, 검수 절차 없이	
	대금 23,100천원을 업체에 지급하는 등【붙임】"물품·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용역 구매 절차 부당"과 같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위 AO 등 교수 2명은 본인이 담당하는 연구용역과제	
	와 관련하여 물품구매·용역 11건을 본인이 직접 업체	
	를 선정하여 납품 받은 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만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였고 산학협력단은 이를 근거로	
	발주, 계약, 검수 절차 없이 대금 합계 202,030천원을	
	업체에 지급한 사실이 있음	

물품·용역 구매 절차 부당

연번	구매품명	연구과제명	지원	과제기간	연구책	임자	금액	거래처	대금지급일	발주·계약· 검수 여부					
핀벤	ተጣ품경	한무과제경	기관	#세기 신	소속	성명	Б Щ	거대시	네마시티틴	검수 여부					
1	用用	777		2017-11-01~2		4.0	23,100,000	-	2019-01-16	X					
2	-	TE TE	-	018-11-01	-	AO	27,500,000	-	2019-01-16	X					
		소 :	계				50,600,000								
3	-						23,000,000	-	2019-01-07	X					
4	-						29,000,000	-	2019-01-29	X					
5	-			2018-11-01~2 019-08-31								29,990,000	-	2019-09-26	Х
6	-				-	AK	25,300,000	-	2019-09-26	Х					
7	-	-					6,000,000	-	2018-12-26	Х					
8	-						16,100,000	-	2019-03-15	Х					
9	-						16,000,000	-	2019-09-26	Х					
10	-						4,500,000	-	2019-10-21	Х					
11	-						1,540,000	-	2019-12-27	Х					
		소	계	,		1	151,430,000								
		*	계				202,030,000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35	산학협력단 물품 임의 제조·판매 부적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	○경고(8명)
	제1항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	○통보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후 물품을 제조· 판매하기 바람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	
	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학교기업")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학생·교원 등 구성원의 의견을 들은 후 학교기업의	
	소재지, 사업종목, 관련 교육과정, 담당직원 현황, 재정	
	투자 계획 등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 한 후 동 사항을 학칙에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双亡归工,	
	-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학교기업 설치·운영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학교기업의 설치도 없이 '18학년도에	
	'ㄱㅈ'를 제조하여 18,387,200원에 판매 하는 등 【붙임】	
	"산학협력단 물품 임의 제조·판매 현황"과 같이 '18학년도	
	부터 '20학년도까지 학교기업 설치·운영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학교기업의 설치도 없이 위 18,387,200원의 'ㄱㅈ' 등	
	13개 제품을 제조하여 합계 3,617,732,020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음	

【붙임】 <u>산학협력단 물품 임의 제조·판매 현황</u>

년도	상품	규격	판매량	판매단가	판매금액	년간 합계			
	コズ	70ml*30	1,040	17,680	18,387,200				
		70ml	150	1,430	214,500				
	-	70ml*30	638	35,971	22,949,400				
		70ml	65	1,600	104,000				
	-	70ml*5	69	8,000	552,000				
		70ml*30	536	35,376	18,961,700				
		70ml	780	800	624,000				
	-	70ml*10	2,393	7,591	18,165,000				
		70ml*30	1,067	20,344	21,707,500				
	-	70ml*30	439	6,623	2,907,500				
	-	70ml*30	349	4,803	1,676,080	627,984,680			
2018	-	70ml*30	6	17,333	104,000	627,984,680			
		250g	521	96,061	50,048,000				
		1kg	2,122	163,021	345,930,000				
	_	50g	79	1,162	91,800				
		50g*3	190	24,321	4,621,000				
	-	500g	1,034	44,854	46,379,000				
	-	20g	155	1,497	232,000				
		20g*10	1,399	21,612	30,235,000				
		15g	204	784	160,000				
	-	15g*5	69 1,090	11,000	759,000 25,246,000				
		15g*10		23,161					
	-	80ml*30	2,000	8,965	17,930,000				
	-	70ml	180	1,430	257,400				
		70ml*30	424	30,393	12,886,600				
		70ml	60	1,660	99,600				
	-	70ml*5 70ml*30	8	4,000	32,000				
		70ml*30 70ml	525 210	39,665 800	20,824,300 168,000				
	_	70ml*10	2,386	7,980	19,040,000				
	-	70ml*30	1,005	23,348	23,465,000				
		250g	333	92,691	30,866,000				
2010	-	1kg	636	165,000	104,940,000	4 ((= 220 40)			
2019		500g	815	43,468	35,426,800	1,665,320,400			
		20g	553	2,252	1,245,600				
	_	20g*4	40	8,625	345,000				
		20g 1 20g*10	1,506	20,082	30,243,500				
		15g	400	968	387,000				
	-	15g*4	60		600,000				
		15g*10	1,196	22,305	26,676,800				
	-	1kg	10,000	130,460	1,304,600,000				
	コズ	70ml*30	3,010	17,680	53,216,800				
	-	70ml*30	301	20,101	6,050,400				
		70ml*30	601	38,383	23,068,300				
		70ml*10	567	5,831	3,306,000				
	-	70ml*30	415	18,019	7,478,000				
		250g	335	88,376	29,606,000				
2020	-	1kg	40	165,000	6,600,000	1 204 407 047			
2020	-	500g	70	39,000	2,730,000	1,324,426,940			
	-	20g*10	2,749	23,371	64,248,240				
				22,585	25,160,000				
	-	15g*10	1,114						
	-	1kg	9,000	126,500	1,138,500,000				
	コス	70ml*30	1,000	17,680	17,680,000				
총계					3,617,732,020				

[※] 생산을 위한 재료비 구입 총계는 2,424,803천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36	학술대회 참가경비 중복 지급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ㅇ경고(2명)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ㅇ주의(2명)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	○시정(회수)
	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중부대학교 교내	
	연구비 및 기타 연구지원 관련 기준 변경의 건<교비	1 534 100위(400 000+
	회계>」(교원인사과-1460, 2018.03.14.)에 따르면 국내 학술	1,134,100)을 관련자
	대회 참가경비는 1회당 200천원을 지급하고, 국제 학술	ニロチョル カウコマニ
	대회 편도 항공요금은 연 1회에 한하여 최대 1,000천원	바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중부대학교는 AP가 참석한 국내 학술대회(2018.4.18.~	
	4. 21.) 참가경비 2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2차례('18. 5.	
	18.,'18.6.8.) 중복(합계 400천원) 지급하는 등【붙임1】	
	"국내 학술대회 참가경비 중복 지급 현황"과 같이 위 AP 등 2명의 국내 학술대회 참가경비 2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각각 2차례 중복(합계 800천원)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또한, AQ은 국제 학술대회(2018.7.1.~7.6.) 참가경비를	
	산단회계 연구비에서 왕복항공비 등 국외출장여비	
	합계 4,070,260원을 신청·지급('18.8.28.)받고도 교비회계 에서 국제학술대회 편도 항공요금으로 ◇과로부터	
	지원금 1,000천원을 중복 신청하여 지급 받는 등	
	【붙임2】"국제 학술대회 참가경비 중복 신청·지급 현황"과	
	같이 위 교수 AQ 등 2명은 동일한 국제 학술대회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참가경비를 산단회계 연구비에서 신청·지급 받고도	
	교비회계에서 지원금 합계 1,134,100원을 중복 신청	
	하여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붙임1】

국내 학술대회 참가경비 중복 지급 현황

(단위: 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학술대회명	참가기간	학회장소	신청일	지급일	지급 희계	지급액	비고	
					′1Q /1 1Q		′18.4.18.		′18.5.18	교비 회계	200,000	
1	-	-	AP	-	~′18.4.21	-	- '18.4.27	′18.6.8	교비 회계	200,000	(반환 대상)	
2					(40.40.4	/10 10 1E	′18.12.28	교비 회계	200,000			
2	-	-	-	-	′18.12.6	-	′18.12.15	′19.1.23	교비 회계	200,000	(반환 대상)	
	중복 지급 합계액											

【붙임2】

국제 학술대회 참가경비 중복 신청·지급 현황

(단위: 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학술대회명	참가기간	재원	지급일	지급액	비고
1	-	_	AQ	-	′18.7.1. ~′18.7.6	연구비	′18.8.28	4,070,260 (산단회계)	왕복항공료 2,084,500
							국제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금 (교비회계)	′18.9.21	1,000,000 (교비회계)
2	-	-	_	-	′18.5.28. ~′18.5.29	연구비	′18.5.30	1,038,960 (산단회계)	왕복항공료 268,200
						국제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금 (교비회계)	′18.6.29	<u>134,100</u> (교비회계)	(반환대상)
		1,134,100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37	산학협력단 입주업체 입주부담금 미징수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 경고(9명)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통보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중부대학교 산업 협력단 정관」 제13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 미납 된 입주부담금 합계 13,193,795원을 입 주 업 체 로 부 터
	하는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산학협력단의	납부 받아 관련회계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입주 계약서」에 따르면 입주 업체는 입주 기간에 일정한 금액의 입주 부담금	
	을 약속 된 기일에 산학협력단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 는데도,	
	-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 업체가 2011.7월부터 2018.10월까지 입주 부담금 9,396,000원을 미납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붙임】"입주업체 입주부담금 미징수 현황"과 같이 위 ▲▲ 등 6개 입주업체가 2011.7월부터 2021.3월까지 입주부담금 합계 13,193,795원을 미납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입주업체 입주부담금 미징수 현황

(단위: 원)

연번	업체명	입주공간	입주기간	납부대상 입주 부담금 (A)	납부액 (B)	미납액 (A-B)	비고
1	**	-	2011.07.07.~20 18.10.	9,396,000	0	9,396,000	입주 중
2	-	-	2016.12.01.~20 18.05.	1,439,995	0	1,439,995	입주 중
3	-	-	2020.10.01.~20 22.09.30	6,450,000	6,020,000	430,000	입주 중
4	-	-	2020.05.01.~20 22.04.30.	30,984,400	29,096,600	1,887,800	입주 중
5	-	-	2021.03.01.~20 23.02.28.	8,392,800	8,352,800	40,000	입주 중
6	-	-	2020.01.01.~20 21.12.31.	5,232,600	5,135,400	97,200	입주 중
		합계		56,663,195	43,469,400	13,193,795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38	지식재산권 이전에 따른 보상금 지급 부적정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ㅇ주의(4명)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ㅇ시정(회수)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중부대학교 지식	
	재산권규정」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연구	2,445,184원을 관련 자로부터 회수하여
	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	
	실시권과 통상실시권과 권한 사용 허락등의 기술이전	세입조치 바람
	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발명자 보상금을 70%, 산학협력단	
	30%의 비율로 보상금을 지급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 019.4.9. 기술('ㅆ')을 이전한	
	후 발명자(AR)에게 업무착오로 정당보상금 250,936원	
	보다 799,064원이 많은 1,050,000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지식재산권 이전에 따른 보상금 과다 지급	
	현황"과 같이 2019.4월부터 2020.12월까지 위 기술	
	('ㅆ') 등 2개 기술을 이전 한 후 발명자에게 업무착오	
	로 정당 보상금 5,604,816원보다 2,445,184원이 많은	
	8,050,000원을 지급 한 사실이 있음	
	※ 기술이전 총액 11,650천원, 기술이전 관련 비용 3,643,120원	

지식재산권 이전에 따른 보상금 과다 지급 현황

(단위 : 원)

		도 기술이전 계약일자		명 발명자	자 기술명	기술 유형 지식재산권번호	기술이전 계약	특허등록 및	직무발명	보상금			
연번	연도						지식재산권번호	정액기술료 (A)	유지비용 (B)	보상 대상 (C=A-B)	실제 보상금 (D=AX0.7)	정당 보상금 (E=CX0.7)	과다 보상금 (D-E)
1	2019	2019.04.09	-	AR	Ж	특허	-	1,650,000	1,291,520	358,480	1,050,000	250,936	799,064
2	2020	2020 12 19		-		특허		10 000 000	2 251 600	7 648 400	3,500,000	2,676,940	823,060
3	2020	20 2020.12.18.	-	-	¬	어 -	10,000,000	2,351,600	7,648,400	3,500,000	2,676,940	823,060	
			합계					11,650,000	3,643,120	8,006,880	8,050,000	5,604,816	2,445,184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9	유류비 임의 집행 부적정	,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제15조에 따르면 산학 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중부대학교 국내외 여비 규정」제8조에 따른 별표2 및「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장여비 지급규정」제6 조에 따른 별표1에 따르면 중부대학교 충청캠퍼스에서 금산·대전 지역의 출장비는 일비 10,000원, 논산·계룡· 세종·공주 지역의 출장비는 20,000원, 그 외 지역은 별 표2 및 별표3에 따라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도,	 주의(3명) 통보 출장에 대한 증빙 없이 집행 된 유류 비 44,619,312원을 출장 확인 후 당사
	- 중부대학교 AS은 '짜' 과제를 수행하면서 출장에 대한 증빙없이 895차례에 걸쳐 유류비 합계 43,600,304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집행하는 등 【붙임】 "유류비 임의집행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위 AS 등 5명은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면서 출장에 대한 증빙 없이 912회에 걸쳐 유류비 합계 44,619,312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유류비 임의 집행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속(학과)	직위(급)	성명	집행 횟수	집행 금액
1	-	-	AS	895	43,600,304
2	-	-	-	11	519,432
3	-	-	-	3	245,576
4	-	-	AM	2	236,000
5	-	-	-	1	18,000
	합기	-	44,619,312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40	계약학과 편입학생 선발 부당	
		○ 경징계(1명) ○ 경고(5명) ○ 통보 - 재직요건 승인을 받지 않고 선발한
	미만 근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ㄱㄱ과 10개월 미만 근로자 선발 현황

연번	성명	입사일	10개월 이상 근무 여부 (o,×)	재직요건 완화 관련 교육부 심의 여부 (o,×)	협약기업명 (대표자, 본사소재)	근무지
1	AT	′20.08.11	×	×	44	-
2	-	′20.09.01	×	×		-
3	-	′20.11.09.	×	×		-
4	-	′20.12.21	×	×	-	-

장기 휴학자 제적 미처리 현황

번호	학과	성명 (학번)	휴학 횟수(입대휴학 제외)	자퇴(제적)일	비고
1	-	AU	10회(2013년 1학기 ~ 2017년 2학기)	2018.01.16.	
2	-	-	8회(2014년 1학기 ~ 2017년 2학기)	2018.01.17.	
3	-	-	9회(2011년 2학기 ~ 2017년 2학기)	2018.01.22.	
4	-	-	8회(2014년 1학기 ~ 2017년 2학기)	2018.01.22.	
5	-	-	8회(2012년 1학기 ~ 2017년 2학기)	2018.02.06.	
6	-	-	10회(2013년 1학기 ~ 2017년 2학기)	2018.02.07.	
7	-	-	11회(2012년 2학기 ~ 2017년 2학기)	2018.02.09.	
8	-	-	12회(2012년 1학기 ~ 2017년 2학기)	2018.04.11.	
9	-	-	12회(2012년 1학기 ~ 2017년 2학기)	2018.04.17.	
10	-	-	8회(2013년 1학기 ~ 2017년 2학기)	2018.04.18.	
11	-	-	10회(2013년 1학기 ~ 2017년 2학기)	2018.05.04.	
12	-	-	8회(2014년 2학기 ~ 2018년 1학기)	2018.06.21.	
13	-	-	9회(2014년 2학기 ~ 2018년 2학기)	2018.12.11.	
14	-	-	9회(2012년 2학기 ~ 2018년 2학기)	2019.01.04.	
15	-	-	14회(2012년 1학기 ~ 2018년 2학기)	2019.01.25.	중부대는 학생이 휴학을
16	-	-	8회(2013년 1학기 ~ 2018년 2학기)	2019.02.07.	원하면 학과
17	-	-	11회(2011년 2학기 ~ 2018년 2학기)	2019.02.21.	상담을 거쳐 승인
18	-	-	12회(2013년 1학기 ~ 2018년 2학기)	2019.03.07	
19	-	-	7회(2015년 2학기 ~ 2018년 2학기)	2019.03.26.	
20	-	-	12회(2013년 1학기 ~ 2018년 2학기)	2019.05.09.	
21	-	-	7회(2013년 2학기 ~ 2018년 2학기)	2019.05.14.	
22	-	-	12회(2013년 1학기 ~ 2018년 2학기)	2019.07.16.	
23	-	-	9회(2013년 2학기 ~ 2019년 2학기)	2020.03.02.	
24	-	-	13회(2013년 2학기 ~ 2019년 2학기)	2020.05.12.	
25	-	-	16회(2012년 1학기 ~ 2019년 2학기)	2020.05.20.	
26	-	-	12회(2012년 1학기 ~ 2019년 2학기)	2020.10.06	
27	-	-	15회(2012년 2학기 ~ 2019년 2학기)	2020.10.30.	
28	-	-	8회(2013년 2학기 ~ 2019년 2학기)	2020.12.10.	
29	-	-	16회(2013년 1학기 ~ 2020년 2학기)	2020.12.29.	
30	-	-	16회(2013년 1학기 ~ 2020년 2학기)	2021.01.29.	
31	-	-	14회(2013년 1학기 ~ 2019년 2학기)	2021.03.02.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42	현장실습 지도·점검 미실시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3에 따르면 직업교육	○ 경고(8명)
	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	○주의(14명)
	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직업	(123)
	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해야 하고,	
	「대학생 현장실습운영규정(교육부 고시)」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실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도	
	(담당)교수 등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부대학교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르면 현장실습 시행학과는 현장실습 지도	
	교수를 자체 선임하여 실습참가 학생에 대한 현장방문	
	지도 및 교내지도를 실시하고 지도교수는 실습 환경,	
	근무 상태 등을 점검하고 실습 학생과 실습기관의 애로점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현장지도 방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중부대학교 AV은 2018학년도 1학기 'ㄱㄴ' 과목을	
	수강한 AW에 대하여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붙임】 "현장실습 지도·점검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8학년 1학기부터 2020학년도 2학기까지 AV	
	등 교원 22명은 AW 등 현장실습 학생 68명에 대하여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u>현장실습 지도·점검 미실시 현황</u>

연번	학년/학기	지도 교수	현장실습 학생(학번)	소속학과	과목명	인정 학점	실습 기관	비고
1	2018-1	AV	AW	-	٦٢	18	-	
			-					
			-					
2	2018-S	-	-	-	-	4	-	
			-					
			-					
	2020 G		-	-	-	6	-	병원 치료
3	2020-S	Q	-	-	-	6	-	병원 치료
			-				-	
			-				-	
4	2010 1		-	-		10	-	
4	2018-1	2018-1 -	-		-	18	-	
			-				-	
			-	-			-	
	2018-2		-		コレ	18	-	
5		-	-	_	-		-	
3	2020-S		-		-	6	-	
			-		-		-	
6	2019-1		-		-	18	-	
	2019-1	_	-	-	-		-	
7	2018-1	-	-	-	-	18	-	
8	2019-S	-	-	-	-	3	-	
9	2018-S	_	-	_	-	4	-	
	2010-3	_	-	-	-	T	-	
10	2019-S	-	-	-	-	3	-	
11	2019-2	-	-	-	フレ	18	-	
			-		-		-	
12	2018-S	-	-	-	-	4	-	퇴사
			-		-		-	

연번	학년/학기	지도 교수	현장실습 학생(학번)	소속학과	과목명	인정 학점	실습 기관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W		-		-	4	-	
	2018-VV		-	-	-	4	-	
			-		-		-	
			-		-		-	
			-		-		-	
			-		-		-	
			-		-		-	
			-		-		-	
13	2018-S	AS	-	-	-	4	-	
	2018-2		-		-	18	_	
	2010 2		-					
14	2018-W	<u>-</u>	-	-	-	4	-	
	2010 1		-		-	10		
	2019-1		-		-	18	-	
15	2018-W	-	-	-	-	4	-	
16	2020-S	-	-	-	-	3	-	
17	2018-S	-	-	-	-	4	-	
			-					
18	2018-1	_	_	_	_	18	_	
	2010-1		_					
	-01					_		
19	2019-W	-	-	-	-	3	-	

연번	학년/학기	지도 교수	현장실습 학생(학번)	소속학과	과목명	인정 학점	실습 기관	비고
			-					
20	2019-W	_	-	_	-	3	-	
			-					
			-					
	2018-S		-		-	4	-	
21	2010-3	_	-	-	-	4	-	
21	2020-S	_	-	_	_	3	_	
	2020-3		-	-	-	3	-	
22	2018-1	-	-	-	フレ	18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43	조기취업생 성적산출자료 미보관 등	
	○「중부대학교 시험과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제6조 및	○ 기관경고
	제13조에 따르면 성적이수의 평가는 출석, 과제물, 시험,	○통보
	수업참여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시험 답안지 및 기타	
	학업성적 평가 자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5년간 보관	시험 및 성적 산출 자료 보관 방안을
	해야 하며, 동 대학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 제3조 및 제4항에 따르면, 조기취업 신청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과제 등을 반드시 참여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며, 다만 교수와 의논하여 중간고사, 기말	
	고사 시험은 과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상) 4학년 재학생으로 등록을 필한 자 중 조기취업된 자	
	- 중부대학교 ◇과는 수업 공결처리 및 성적·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조기취업 학생의 소속 학과	
	또는 담당교원에게 중간·기말고사 실시 및 성적 평가	
	자료 보관 안내 등 학사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이로 인하여 AV은 2018학년도 2학기 ◆◆에 조기	
	취업한 AX의 'ㄱㅊ' 과목 성적산출 자료(과제)를 보관	
	하지 않는 등 【붙임】 "조기취업자 성적평가 자료 미	
	보관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0학년도	
	2학기까지 위 AV 등 교원 212명은 조기 취업한 학생	
	총 672명의 성적산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기취업자 성적평가 자료 미보관 현황

연번	교수명 (소속)	학기	학생 소속	학생명	취업기관	수강과목	시험 유형
		2018-2	-	AX	**	コネ	과제
		2019-1	-	-	-	_	과제
		2019-1		-	-	_	과제
		2019-1	<u> </u>	-	-	-	과제
		2019-2	-	-	-	_	과제
1	AV	2019-2	-	-	-	_	과제
		2019-2	-	-	-	-	과제
		2019-2	=	-	-	-	과제
		2019-2	-	-	-	_	과제
		2019-2	-	-	-	-	과제
2	-	2020-2	-	-	-	-	과제
		2019-1	_	-	-	-	과제
_		2019-2	-	-	-	_	과제
3	-	2019-2	-	-	-	-	과제
		2019-2	-	-	-	-	과제
4	-	2018-2	-	-	-	-	과제
5	-	2020-1	-	-	-	-	시험
6	_	2019-2		_	-	_	과제
0		2017-2	<u>-</u>		-	-	77/11
				<중 략>			
		2018-2	-	-	-	-	과제
		2018-2	-	-	-	-	과제
		2018-2	-	-	-	-	과제
		2018-2	-	-	-	-	과제& 시험
		2018-2	-	-	-	-	과제
206	_	2019-1	-	-	-	-	과제
200		2019-1	=	-	-	-	과제
		2019-1	-	-	-	-	과제
		2019-1	-	-	-	-	과제 과제&
		2019-2	-	-	-	-	시험
		2019-2	-	-	-	-	과제
							과제&
		2019-2	-	-	-	-	시험
207	-	2018-1	-	-	-	-	과제
200		2018-2	-	-	-	-	과제
208	<u>-</u>	2020-2	-	-	-	-	과제& 시험
209		2018-1	-	-	-	-	과제 과제
209	-	2018-1		_		-	과제 과제
		2019-1	<u> </u>	-	-	-	과제
		2019-2	-	-	<u>-</u>	-	과제
		2019-2	-	-	-	-	과제
210	-	2019-2	-	-	-	_	과제
		2019-2	-	-	-	-	과제
		2019-2	-	-	-	-	과제
		2018-1	-	-	-	-	과제
		2018-1	_	_	-	-	과제
211	-	2018-2	-	-	-	-	과제
		2019-2	-	-	-	-	과제
		2019-2	-	-	-	-	과제
212	-	2019-1	-	-	-	-	과제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44	출석부 관리 부적정	
	○ 「중부대학교 시험과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제2조에	ㅇ경고(3명)
	따르면 성적이수의 평가는 출석, 과제물, 시험, 수업	ㅇ통보
	참여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고 되어있으며, 「중부대	- 출석부 제출·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제29조에 따르면 교과목	출석부 관리를 철
	담당교수는 해당교과목에 대한 성적평가표 2부를 작성	저히 하기 바람
	하여 1부는 대학원에 제출하고 1부는 담당교수가 보관	
	하며, 성적평가와 관련한 시험답안지 및 기타관련 서류는	
	담당교수가 4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대학원에서 평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중부대학교 AK은 2018학년도 2학기에 담당한 중부	
	대학교 대학원 'ㄱㄷ' 과목 출석부를 2021. 4.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보관)하지 않는 등【붙임】"출석부	
	미제출(보관) 현황"과 같이 위 AK 등 중부대학교 교원 3명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2020학년도 2학기까지	
	자신이 담당한 위 중부대학교 대학원 'ㄱㄷ'등 6개	
	과목 출석부를 2021. 4.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보관)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출석부 미제출(보관) 현황

연번	소속	직	성명	학기	대 학 원	과정	학과	교과목명	비고
1	-	-	AK	2018- 2학기	일반대학원	석사	-	٦٢	
2				2018- 2학기	일반대학원	석사	-	-	
3				2018- 2학기	일반대학원	박사	-	-	
4				2019- 1학기	일반대학원	박사	-	-	
5	-	-	-	2018- 2학기	인문산업 대 학 원	석사	-	-	
6	-	1	-	2019- 2학기	일반대학원	석사	-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45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등	
	○ 「평생교육법」제3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4조에	ㅇ경고(7명)
	따르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등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운영	
	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부「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 철저(평생	
	학습정책과-422, 2017.01.18.)」 공문에 따르면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과정 등 설치보고한 사항을 변경	
	할 경우 교육부에 변경보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중부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평생교육과정개설 및 편성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타	
	평생교육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중부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2018학년도 봄학기	
	'ㄱㄹ'강좌를 신규 개설하면서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붙임1】"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 개설	
	미보고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봄학기부터 2019학년도	
	겨울학기까지 위 'ㄱㄹ'등 8개 과정을 신규 개설	
	하면서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2019학년도에는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붙임2】	
	"2019학년도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같이	
	'ㄱㅁ'등 20개 과정을 편성·운영한 사실이 있음	

【붙임1】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현황

연번	학 기	강 좌 명	강사명	정원 (명)	교육기간(요일)	刵	고
1	2018-봄	ㄱㄹ	-	30	03.05.~05.28.(15주, 월)		
2	2018-봄	٦ロ	-	20	03.09.~06.15.(15주, 금)		
3	2018-가을	-	-	40	09.14.~12.18(14주, 화)		
4	2018-가을	-	-	6	09.03.~10.15.(6주, 월)		
5	2018-가을	-	-	6	09.03.~10.15.(6주, 월)		
6	2018-가을	-	-	6	09.02.~10.14.(6주, 일)		
7	2019-봄	-	-	20	03.16.~06.22.(15주, 토)		
8	2019-여름	-	-	16	06.26.~08.21.(8주, 수)		

【붙임2】

2019학년도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현황

연번	학 기	강 좌 명	강사명	정원 (명)	교 육 기 간(요일)	비	고
1	2019-봄	٦ロ	-	20	03.15.~04.19.(6주, 금)		
2		-	-	7	03.11.~06.24.(16주, 월)		
3		-	-	15	03.15.~05.31.(12주, 금)		
4		-	-	15	03.15.~05.31.(12주, 금)		
5		-	-	20	03.12.~05.14.(10주, 화)		
6		-	-	20	03.16.~06.22.(15주, 토)		
7	2019-여름	קם	-	20	06.28.~08.02.(6주, 금)		
8		-	-	10	07.09.~08.12.(6주, 월)		
9		-	-	10	06.07.~08.23.(12주, 금)		
10		-	-	10	06.07.~08.23.(12주, 금)		
11		-	-	16	06.26.~08.21.(8주, 수)		
12	2019-가을	חם	-	20	09.20.~10.25.(6주, 금)		
13		-	-	16	09.04.~12.18.(15주, 수)		
14		-	-	10	09.17.~11.19.(10주, 화)		
15		-	-	12	09.10.~12.17.(15주, 화)		
16		-	-	20	10.16.~12.04.(8주, 수)		
17		-	-	10	09.06.~11.29.(12주, 금)		
18	2019-겨울	-	-	10	01.08.~02.19.(7주, 수)		
19		-	-	10	11.11.~02.03.(12주, 월)		
20		-	-	10	01.10.~04.24.(15주, 금)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46	출장비 지급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ㅇ기관경고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ㅇ시정(회수)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고, 「중부대학교 국내·외	여비 395,000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화수
	여비 규정」제5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여비는 정상적인	하여 관련회계에
	여정에 따라 이를 계산하며,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따라 이를 지급하고,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ㅇ개선
	지급하며, 충청, 고양 캠퍼스 간 출장 식비는 1/2 감액	- 실제 출장여부를
	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도,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 중부대학교는 AY이 2019. 10. 28. ~ 11. 01.(5일간) 충청	· ·
	캠퍼스로 출장을 신청하고 실제 2019.10.29.~11.01.(4	하기 바람
	일간) 출장업무를 수행(2019.10.28. 수업 실시)하였음에도,	
	여비지급 규정 상 정산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실제	
	출장일수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출장신청 기간(5일)의	
	여비 전액인 370,400원을 지급(정상지급액 : 300,400원,	
	과다지급액 : 70,000원) 하는 등 【붙임】 "여비 과다지급	
	현황"과 같이 위 AY 등 교원 3명이 출장신청 기간보다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3일까지 수업 등 사유로 출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여비지급 규정 상 정산	
	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실제 출장일수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출장신청 기간(5일)의 여비 전액 합계	
	1,086,200원을 지급(정상지급액 : 691,200원, 과다지급액 :	
	395,000원)한 사실이 있음	

여비 과다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번	<i>章</i> 소속	출 장 직	자 성명	출장지	목 2	적	출장신청일 (기간)	실제출장일 (기간)	출장비 지급액	정 상 지급액	과 다 지급액	비고
1	-	-	AY	충 청 캠퍼스	-		'19.10.28.~ 11.01. (5일)	'19.10.29.~ 11.01. (4일)	370,400	300,400	70,000	2ই
2	-	-	-	충 청 캠퍼스	-		'19.10.28.~ 11.01. (5일)	'19.10.29.~ 11.01. (4일)	345,400	280,400	65,000	3হূ
3	-	-	-	충 청 캠퍼스	-		'19.10.28.~ 11.01. (5일)	'19.10.30., '19.11.01. (2일)	370,400	110,400	260,000	2호
		합	계						1,086,200	691,200	395,000	

【참고】

국내 여비지급 기준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비고
제2호	KTX일반	정액(2등)	정액(2등)	버스(우등)	20,000	60,000 /	20,000	교무위원, 교수, 부교수, 부속기관장, 부장급 이상
제3호	KTX일반	정액(2등)	정액(2등)	버스(우등)	15,000	그밖의 지역 50,000	20,000	조교수, 과장, 계장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47	특수대학원(야간) 학사관리 부당	
	○ 「고등교육법」제23조에 따르면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ㅇ경징계(1명)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ㅇ경고(3명)
	있다고 되어 있고,「중부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3조에	
	따르면 과목당 학점의 인정은 강의시간의 3분의 2	통보
	이상을 출석하고, 그 성적이 2.0(C, 70점) 이상이어야	- 출석일수가 부족
	하며, 수료에 필요한 성적은 평점평균 3.0(B, 80점) 이상	함에도 학점이
	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중부대학교 시험과 성적평가에	인정된 AZ, BA 등 2명에 대해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르면 수업시간 시작 후 10분	학칙 등 관련규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조퇴는 강의도중	정에 따라 조치
	담당교과목 교수의 승인 후 퇴실하는 것을 말하고,	하기 바람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1회의 결석으로 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중부대학교 AP는 2015학년도 1학기 중부대학교 특수대	
	학원(야간) ㄱㅂ과 석사과정 'ㄱㅅ'(강의시간 : 금 19:00~, 3학점)	
	과목을 강의하면서 2015.3.13. AZ(학번 ********)이 직장	
	에서의 초과근무(18:00~19:26)로 10분 이상 지각하	
	였는데도 출석부에 출석으로 기재하는 등【붙임】	
	"특수대학원(야간) ㄱㅂ과 석사과정 출석부 부당 기재	
	현황"과 같이 위 AP 등 중부대학교 교원 4명은 2015	
	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중부대학교	
	특수대학원(야간) ㄱㅂ과 석사과정 총 18개 과목을 강의	
	하면서 위 AZ 등 학생 4명이 직장에서의 초과근무 등	
	으로 10분 이상 지각하거나, 당직, 출장 등으로 출석하지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않았는데도 출석부에 출석으로 기재하였고, 그 결과	
	위 2015학년도 1학기 'ㄱㅅ' 과목 등 15개 과목에서	
	AZ 등 2명의 출석일수가 강의시간의 3분의 2미만	
	임에도 학점을 부여(3.5 ~ 4.0)한 사실이 있음	

특수대학원(야간) ㄱㅂ과 석사과정 출석부 부당 기재 현황

연번 교수명	학생명	학기	되 다 다	수 업	7 H	1주	2주	22	4주	5주	(3	77.	8주	0.25	10주	11.7	12주	102	14주	152	출석		가 점		32 7J	평점
연민 교수병	학생명 (학 번)	थर।	과목명	수 업 시 간	구 분	15	25	3주	47	25	6주	7주	85	9주	10年	11주	124	13주	147	15주	출석 일수	출석	과제	기말	중심	생원
1 AP	AZ	2015	コム	금 (19:00~)	수업일	03.06.	03.13.	03.20.	03.27.	04.03.	04.10.	04.17.	04.24.	04.31.	05.08.	05.15.	05.22.	05.29.	06.05.	06.19.						
					출석부 기 재	-	-	결석	결석	-	-	-	-	-	-	-	-	-	-	-	13	18	25	34	90	4.0
					근 무			관내출장		관내출장	_	초과근무	초과근무	_	관내출장		초과근무	관내출장		초과근무						
					상 황	(~18:00)	/	(~17:00)		(~14:00)		(~20:13)	(~20:09)		(~17:00)	(~15:00)		(~18:00)		(~20:05)						
					검 토	-	결석	결석	결석	-	-	결석	결석	-	-	-	결석	-	결석	-	8					х
		2015	-	금 (19:00~)	수업일	09.04.	09.11.	09.18.	09.25.	10.02.	10.09.	10.16.	10.23.	10.30.	11.06.	11.13.	11.20.	11.27.	12.04.	12.18.						
					출석부 기 재	-	-	-	-	-	-	-	-	-	-	-	-	-	-	-	15	15	30	45	90	4.0
					근 무 상 황	초과근무 (~19:56)		관내출장	초과근무 (~20:00)	초과근무 (~20:13)		초과근무		초과근무	_	초과근무	초과근무 (~20:00)	초과근무 (~20:20)	-	관내출장						
						/	(~18:00)	(~17:00)		/	(~15:59)		(~18:00)	(~20:27)		(~20:15)				(~18:00)	7					\
		2016			검 토	결석	-	-	결석	결석	-	결석	-	결석	-	결석	결석	결석	-	-	7					х
		2016	-	급 (19:00~)	수업일	03.04.	03.11.	03.18.	03.25.	04.01.	04.08.	04.15.	04.22.	04.29.	05.06.	05.13.	05.20.	05.27.	06.03.	06.17.						
					출석부 기 재	-	-	-	-	-	-	-	-	-	결석	-	-	-	-	-	13	18	30	42	90	4.0
					근 무 상 황	초과근무 (~20:13)		초과근무 (~20:01)	-	-	-	관내출장 (~18:00)	관내출장 (~18:00)	연가 (1일)	-	초과근무 (~20:02)	초과근무 (~20:09)	관내출장 (~18:00)	관내출장 (~18:00)	초과근무 (~19:54)						
					검토	<u>결</u> 석	-	<u>결</u> 석	_	_	_	(10.00)	-	(1 2)	결석	<u></u> 결석	(20.0 <i>)</i>	-	-	-	10					0
		2016		۵.		·	_				_	_		_	1		-27				10					\vdash
		-2	-	(19:00~)	수업일	08.31.	09.07.	09.14.	09.21.	09.28.	10.05.	10.12.	10.19.	10.26.	11.02.	11.09.	11.16.	11.23.	11.30.	12.14.						
					출석부 기 재	-	-	-	-	-	-	-	-	-	-	-	-	-	-	-	15	5	25	60	90	4.0
					근 무 상 황	관내출장 (~18:00)	관내출장 (~17:00)	-	관내출장 (~18:00)	관내출장 (~18:00)	초과근무 (~21:23)	초과근무 (~18:54)	-	관내출장 (~15:00)	대체휴무 (1일)	관내출장 (~15:00)	관내출장 (~15:00)	-		관내출장 (~18:00)						
					검 토	-	-	-	-	-	결석	-	-	-	-	_	-	-	-	-	14					0
	BA	2019	_	목 (10.00.)	수업일	03.07.	03.14.	03.21.	03.28.	04.04.	04.11.	04.18.	04.25.	05.02.	05.09.	05.16.	05.23.	05,30,	06.06.	06.20.						
		-1		(19:00~)	출석부														24 13		10	45	20	45	00	4.0
					기 재	7 -	-1.111	결석	결석	-1-11-2-21	-	-1 A) -2 -1		-1.111		-			결석		12	15	30	45	90	4.0
					근 무 상 황	조퇴 (~18:00)	관내출장 (~15:00)	관내출장 (~18:00)	초과근무 (~20:46)	관내출장 (~14:00)	-	관외출장 (16.~19.)	초과근무 (~20:23)	관내출장 (~15:00)		-	초과근무 (~21:09)	초과근무 (~20:25)	조과근무 (~22:09)	초과근무 (~18:00)						
					검 토	_	-	결석	결석	-	-	결석	결석	_	결석	-	결석	결석	결석	-	7					х

બ્રે મો	교수명	학생명 (학 번)	학기	과목명	수 업 시 간	구 분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출석	평 출석	가 점	수	총점	평점
		(막 번)	2019		시 간 월		- '	- '	,	- '	,	,	- '	• •	- '	,	'		10,			일수	출석	과제	기말		
1	AP	BA	-2	-	(19:00~)	수업일	08.26.	09.02.	09.09.	09.16.	09.23.	09.30.	10.07.	10.14.	10.21.	10.28.	11.04.	11.11.	11.18.	11.25.	12.09.						
						출석부 기 재	-	-	결석	-	-	-	결석	-	-	결석	-	-	-	-	-	12	17	27	46	90	4.0
						근 무 상 황	초과근무 (~20:18)	관내출장 (~14:00)	외출 (~17:00)	관내출장 (~16:00)	관내출장 (~14:00)	관내출장 (~16:00)	초과근무 (~20:30)	초과근무 (~21:31)	관내출장 (~14:00)	초과근무 (~20:22)	초과근무 (~18:00)	병가 (~14:00)	초과근무 (~21:09)	초과근무 (~21:04)	초과근무 (~22:33)						
						검 토	결석	-		-	-	-	결석		-	결석	-	-		결석	-	8					х
		-	2019	-	목 (19:00~)	수업일	03.07.	03.14.	03.21.	03.28.	04.04.	04.11.	04.18.	04.25.	05.02.	05.09.	05.16.	05.23.	05.30.	06.06.	06.20.						
			-1		(17.00)	출석부 기 재	-	-	-	결석	-	-	-	-	-	결석	_	-	-	_	-	12	15	30	45	90	4.0
						구 무 상 황	초과근무 (~20:29)	-	-	초과근무 (~18:00)	초과근무 (~20:12)	-	초과근무 (~21:07)	초과근무		초과근무 (~20:51)	-	휴가 (~18:00)	외출 (~18:00)	_	특별휴가 (~18:00)						
						검토	(~20.2 ₉) 결석	_	_	(*18.00) 결석	(~20.12) 결석	_	(*21.07) 결석	(~18:17) -	(*18.00)	(*20.51) 결석	_	- (~18.00)	(*18.00)	_	(~18:00)	10					0
2	_	AZ	2015		화 (10.00.)	수업일	03.03.	03.10.	03.17.	03.24.	03.31.	04.07.	04.14.	04.21.	04.28.	05.05.	05.12.	05.19.	05.26.	06.02.	06.16.						$\overline{}$
			-1		(19:00~)	출석부	_	_	_	결석	결석	_	_		_	_	_	_	_	-	_	13	18	25	47	90	A
						기 재 근 무	초과근무	관내출장	초과근무	초과근무	27	초과근무	초과근무	초과근무			초과근무	관내출장			관내출장	15	10	20	17		(4.0)
						장 황	(~20:46)	(~15:00)	(~22:17)	(~21:30)	-	(~21:53)	(~21:13)	(~21:28)	(~17:00)	-	(~22:04)	(~15:00)	(~15:00)	-	(~18:00)						
						검 토	결석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	-	결석	-	-	-	-	7					Х
			2015	-	화 (19:00~)	수업일	09.01.	09.08.	09.15.	09.22.	09.29.	10.06.	10.13.	10.20.	10.27.	11.03.	11.10.	11.17.	11.24.	12.01.	12.15.						
						출석부 기 재	-	-	-	결석	-	-	-	-	-	-	결석	-	-	-	-	13	18	28	44	90	A (4.0)
						근 무 상 황	초과근무 (~21:44)	초과근무 (~21:51)	초과근무 (~22:03)	초과근무 (~21:41)	-	초과근무 (~21:29)	초과근무 (~21:31)	관내출장 (~18:00)	초과근무 (~22:01)	초과근무 (~21:15)	초과근무 (~21:42)	초과근무 (~21:19)	초과근무 (~21:14)	초과근무 (~22:24)	초과근무 (~21:45)						
						검 토		결석	결석		-	결석	결석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	3					х
			2016		화	수업일	03.01.	03.08.	03.15.	03.22.	03.29.	04.05.	04.12.	04.19.	04.26.	05.03.	05.10.	05.17.	05.24.	05.31.	06.14.						
			-1		(19:00~)	출석부	******									결석						13	18	30	42	90	
						기 재 근 무	-	- 초과근무	- 초과근무	- 초과근무	- 초과근무	- 초과근무	- 초과근무	- 초과근무	관내출장		- 관내출장	- 초과근무	- 초과근무	- 초과근무	·	13	10	30	42	90	A (4.0)
						상 황	-	(~21:34)	(~21:36)	(~21:12)	(~21:02)	(~21:24)	(~22:05)	(~21:20)		(~18:00)	(~18:00)	(~21:31)	(~21:14)	(~21:20)	(~21:07)						
						검 토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	결석	-	결석	결석	결석	-	4					х
			2016	-	화 (18:00~)	수업일	08.30.	09.06.	09.13.	09.20.	09.27.	10.04.	10.11.	10.18.	10.25.	11.01.	11.08.	11.15.	11.22.	11.29.	12.13.						
						출석부 기 재	-	-	결석	-	-	결석	-	-	결석	-	-	-	-	-	-	12	17	26	47	90	4.0

αн	교수명	학생명 (학 번)	학기	과목명	수 업 시 간	구 분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출석 일수		가 점		총점	멸정
7.47		(학 번)		770			· ·	,		3 1	37	,	·	·		107	,	127	107			일수	출석	과제	기말	0 10	78 12
2	-	AZ	2016	-	화 (18:00~)	근 무 상 황	초과근무 (~21:20)	관내출장 (~13:00)	관내출장 (~15:00)	-	-	초과근무 (~20:00)	초과근무 (~20:21)	초과근무 (~21:57)	초과근무 (~21:08)	당직	초과근무 (~21:27)	-	-	초과근무 (~21:07)							
						검 토	결석	-	결석	-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	_	결석	-	6					х
		BA	2019 -1	-	급 (19:00~)	수업일	03.08.	03.15.	03.22.	03.29.	04.05.	04.12.	04.19.	04.26.	05.03.	05.10.	05.17.	05.24.	05.31.	06.07.	06.21.						
						출석부 기 재	-	-	-	결석	-	-	-	-	결석	-	-	-	-	-	-	13	18	25	42	85	B+ (3.5)
						근 무 상 황	연가 (1일)	관내출장 (~15:00)	관내출장 (~18:00)	초과근무 (~21:48)	초과근무 (~20:58)	관내출장 (~16:00)	관외출장 (~18:00)	관내출장 (~15:00)	초과근무 (~21:11)	초과근무 (~21:22)	조퇴 (~18:00)	초과근무 (~21:13)	휴가 (1일)	휴가 (1일)	관외출장 (~18:00)						
						검 토	-	-	-	결석	결석	-	-	-	결석	결석	-	결석	-	-	-	10					0
3	-	AZ	2015 -1	-	목 (19:00~)	수업일	03.05.	03.12.	03.19.	03.26.	04.02.	04.09.	04.16.	04.23.	04.30.	05.07.	05.14.	05.21.	05.28.	06.04.	06.18.						
						출석부 기 재	-	-	-	결석	결석	-	-	-	-	-	-	-	-	-	-	13	18	25	36	92	4.0
						근 무 상 황	-	-	관내출장 (~15:00)	초과근무 (~21:57)	관내출장 (~18:00)	초과근무 (~22:19)	초과근무 (~22:04)	초과근무 (~21:54)	초과근무 (~21:26)	초과근무 (~20:37)	-	초과근무 (~21:41)	-	-	초과근무 (~21:53)						
						검 토	-	-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	결석	-	-	-	7					х
			2015	-	목 (19:00~)	수업일	09.03.	09.10.	09.17.	09.24.	10.01.	10.08.	10.15.	10.22.	10.29.	11.05.	11.12.	11.19.	11.26.	12.03.	12.17.						
						출석부 기 재	-	-	-	-	-	-	-	_	-	-	-	-	-	-	-	15	15	20	57	92	4.0
						근 무상황	초과근무 (~21:48)	관내출장 (~18:00)	초과근무 (~21:20)	초과근무 (~21:01)	초과근무 (~21:50)	초과근무 (~21:20)	초과근무 (~21:37)	초과근무 (~21:27)	초과근무 (~22:16)	-	-	초과근무 (~22:05)	관내출장 (~18:00)	초과근무 (~21:13)	관내출장 (~18:00)						
						검 토	/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	-	결석	-	결석	-	5					х
			2016	-	목 (19:00~)	수업일	03.03.	03.10.	03.17.	03.24.	03.31.	04.07.	04.14.	04.21.	04.28.	05.05.	05.12.	05.19.	05.26.	06.02.	06.16.						
					(출석부 기 재	-	-	-	-	-	-	-	-	-	결석	-	-	-	-	-	15	18	30	45	93	4.0
						· 구 근 무 상 황	초과근무 (~22:35)	초과근무 (~19:58)	-	초과근무 (~21:13)	초과근무 (~21:52)	초과근무 (~20:16)	초과근무 (~21:11)	관내출장 (~18:00)	초과근무 (~22:03)	-	초과근무 (~21:17)	관내출장 (~18:00)	초과근무 (~21:20)	관내출장 (~18:00)							
						검 토	()	결석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	결석	결석	결석	-	결석	-	-	5					х
			2016	-	목 (19:00~)	수업일	09.01.	09.08.	09.15.	09.22.	09.29.	10.06.	10.13.	10.20.	10.27.	11.03.	11.10.	11.17.	11.24.	12.01.	12.15.						
			-		(25.00)	출석부 기 재	-	_	-	_	-	_	_	-	-	-	_	-	_	결석	_	14	19	18	56	93	4.0
						근 무 상 황	초과근무 (~20:00)	-	-	_	-	관내출장 (~14::00)	초과근무 (~22:03)	초과근무 (~21:42)	초과근무 (~22:06)	초과근무 (~21:51)	초과근무 (~21:21)	초과근무 (~21:07)	초과근무 (~22:14)	초과근무 (~21:05)	초과근무 (~20:03)						
						· · · · · · · · · · · · · · · · · · ·		_	_		-	-	(*22.05) 결석	(*21.42) 결석	(*22.00) 결석	(*21.51) 결석	(*21.21) 결석	(*21.07) 결석	(*22.14) 결석	(*21.05) 결석	-	6					х

학생명	*1.71	히모며	수 업	-Z H	12	っス	22	42	EZ	<i>(</i> 2	77.7	0.7	0.2	102	11.7	102	102	147	15.7	출석				초점	평점
(학 번)	1	শ্ব ত		TE	177	27	37	4 T	27	07	/+	0 T	77	107	117	127	137	147	194	일수	출석	과제	기말	ተ ሞ	*8*2
BA	2019 -1	-	월 (19:00~)	수업일	03.04.	03.11.	03.18.	03.25.	04.01.	04.08.	04.15.	04.22.	04.29.	05.06.	05.13.	05.20.	05.27.	06.03.	06.17.						
				출석부 기 재	-	결석	-	결석	-	-	결석	-	-	-	결석	-	-	-	-	-	-	-	-	91	4.0
				근 무 상 황	초과근무 (~21:32)	관내출장 (~15:00)	관내출장 (~14:00)	초과근무 (~20:19)	초과근무 (~21:13)	초과근무 (~19:56)	초과근무 (~20:23)	초과근무 (~20:47)	초과근무 (~22:00)	초과근무 (~18:23)	초과근무 (~20:36)	-	초과근무 (~20:58)	초과근무 (~21:26)	초과근무 (~21:18)						
				검 토	결석	결석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	결석	결석	-	3					х
	2019	-	수 (19:00~)	수업일	08.27.	09.03.	09.10.	09.17.	09.24.	10.01.	10.08.	10.15.	10.22.	10.29.	11.05.	11.12.	11.19.	11.26.	12.10.						
			,	출석부 기 재	-	-	-	결석	-	-	-	결석	-	결석	-	-	-	-	-	12	17	27	46	90	4.0
				근 무 상 황		관내출장 (~14:00)		-	-	-				초과근무 (~20:12)	병가 (1일)	초과근무 (~21:49)			초과근무 (~20:46)						
				검 토	-	-	-	결석	-	-	결석	결석	-	결석	-	결석	결석	결석	-	8					х
BA	2019	-	화 (19:00~)	수업일	08.27.	09.03.	09.10.	09.17.	09.24.	10.01.	10.08.	10.15.	10.22.	10.29.	11.05.	11.12.	11.19.	11.26.	12.10.						
			,	출석부 기 재	_	-	-	_	-	-	-	-	-	-	-	-	-	-	-	15	20	27	46	93	4.0
				근 무 상 황	초과근무 (~18:28)		관내출장 (~16:00)	-	-	-	초과근무 (~20:55)	초과근무 (~20:46)	초과근무 (~18:00)	초과근무 (~20:12)	병가 (1일)	초과근무 (~21:49)	초과근무 (~20:26)		초과근무 (~20:46)						
				검 토	-	-	-	_	-	_	결석	결석	-	결석	-	결석	결석	결석	-	9					х
-	2019	-	화 (19:00~)	수업일	08.27.	09.03.	09.10.	09.17.	09.24.	10.01.	10.08.	10.15.	10.22.	10.29.	11.05.	11.12.	11.19.	11.26.	12.10.						
			(23,000)	출석부 기 재	-	-	-	-	-	-	-	-	-	-	-	-	-	-	-	15	20	26	45	91	4.0
				근 무 상 황					-	-	-	-		초과근무 (~18:00)			-	-	-						
				검토	-	-	결석	결석	-	-	-	-	-	-	-	-	-	-	-	13					0
-	2019	-	화 (19:00~)	수업일	08.27.	09.03.	09.10.	09.17.	09.24.	10.01.	10.08.	10.15.	10.22.	10.29.	11.05.	11.12.	11.19.	11.26.	12.10.						
			(12.00)	출석부 기 재	-	-	-	-	-	-	-	-	-	-	-	-	-	-	-	15	20	26	46	92	4.0
				근 무	관내출장 (~14:00)	-	대체휴무 (1일)	관내출장 (~14:00)		-	-	관내출장 (~17:00)	초과근무 (~22:36)	-	-	-									
				검토	(.14.00)	_	(1 E)	(.14.00)	(14.00)	_	_	(~17.00)	(~22.36) 결석	_	_	_	(~14.00)	(*14.00)	(~21.07)	14			\vdash		0
	BA	BA 2019 -2 BA 2019 -2 - 2019 -2	BA 2019 2019 - 2019 -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BA 2019 - (19:00~) BA 2019 - (19:00~) BA 2019 - (19:00~) - 2019 - \$\frac{3}{19:00}\$ - 2019 - \$\frac{3}{19:00}\$ - 2019 - \$\frac{3}{19:00}\$	BA 2019 - 1	BA 2019 -1 (19:00~) 수업일 03.04. 출석부 - 구 상 왕 (~21:32)	BA 2019 -1 - (19:00~) 수업일 03.04. 03.11. 급석	BA 2019 - 1 -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BA 2019 - 1 원 (19:00~) 수업일 03.04. 03.11. 03.18. 03.25.	BA 2019 - 1	BA 2019 -1 -1 2019 수업일 03.04. 03.11. 03.18. 03.25. 04.01. 04.08.	BA 2019 - 1	BA 2019 - 1 -	BA 2019 - 1 (19.00-) 수업원 03.04 03.11 03.18 03.25 04.01 04.08 04.15 04.22 04.29.	BA 2019 - 1	BA 2019 -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BA 2019 - 1 - 1 - 1 - 1 - 1 - 1 - 1 - 1 - 1 -	BA 2019 - 연입 63.04 03.11 03.18 03.25 04.01 04.08 04.15 04.22 04.29 05.06 05.13 05.20 05.27 전체 2 4	BA 2019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BA 2010 1	BA 2019 1 0 1 1900-) 주입일 0.04 0.11 0.11 0.11 0.11 0.12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			BA 200	Act Act

^{※ 15}주차는 기말고사기간으로 각 학생들이 제출한 기말고사 답안지가 확인되므로 출석으로 인정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48	비품관리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9조에 따르면 물품관리자·	○ 경고(9명)
	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ㅇ통보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중부대학교 비품관리 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에 따르면 비품을 사용	망실한 자에 대해 서는 관련규정에
	중 도난, 망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비품 망실.	따라 적절한 조치를
	파손보고서를 작성하여 비품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기 바람
	하고,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비품을	
	도난,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관리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물품을 1개월 내에 변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중부대학교 BB는 2011. 7. 27. 취득한 골프채(TL910DR	
	드라이버, 구입가액 700,000원) 2개를 2020. 미상일에 망실하는	
	등 【붙임】"비품 망실 현황"과 같이 위 BB 등 교수	
	9명은 2019. 미상일부터 2021. 4. 감사일 현재까지 위	
	골프채 등 비품 총 30점(취득가액 합계:23,965천원)을 망실한 사실이 있으며,	
	- 나아가 위 BB 등 교수 9명은 2019. 미상일부터 2021. 4.	
	감사일 현재까지 위 골프채 등 비품 총 30점(취득가액 합계 :	
	23,965천원)을 망실했음에도 비품 주관부서에 비품 망실· 파손보고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파근모고서를 작성하여 중모하시 않는 사실이 있다	

비품 망실 현황

(단위 : 원)

연 번	비품명	규격	취득일	취득가액	잔존 가액	관련학부	교수명	분실일 (추정)	회 계
1	골프채	드라이버/ TL910DR/D2/D3	2011-07-27	700,000	-	-	BB	2020.1	교비
2	골프채	드라이버/ TL910DR/D2/D3	2011-07-27	700,000	-	-	BB	2020.1	교비
3	골프채	우드/ TL 910-F	2011-07-27	300,000	-	-	BB	2020.1	교비
4	골프채	우드/ TL 910-F	2011-07-27	300,000	-	-	ВВ	2020.1	교비
5	골프채	퍼터/ TL SC 캘리포니아	2011-07-27	350,000	-	-	ВВ	2020.1	교비
6	골프채	퍼터/ TL SC 캘리포니아	2011-07-27	350,000	-	-	ВВ	2020.1	교비
7	골프채	퍼터/ TL SC 캘리포니아	2011-07-27	350,000	-	-	ВВ	2020.1	교비
8	골프채세트*	나이키 남성용(백포함)	2015-08-04	2,243,000	-	-	-	2020.1	교비
9	골프채세트**	나이키 여성용(백포함)	2016-02-18	1,814,500	-	-	-	2020.1	교비
10	자전거	MIB/ 블랙켓 엑스퍼트 17'	2011-07-21	580,000	-	-	-	2020.2	교비
11	자전거	MIB/ 블랙켓 엑스퍼트 17'	2011-07-21	580,000	-	-	-	2020.2	교비
12	자전거	MIB/ 블랙켓 엑스퍼트 17'	2011-07-21	580,000	-	-	-	2020.2	교비
13	자전거	MIB/ 블랙켓 엑스퍼트 17'	2011-07-21	580,000	-	-	-	2020.2	교비
14	자전거	MIB/ 블랙켓 엑스퍼트 17'	2011-07-21	580,000	-	-	-	2020.2	교비
15	자전거	MIB/ 블랙켓 엑스퍼트 17'	2011-07-21	580,000	-	-	-	2020.2	교비
16	자전거	MIB/ 블랙켓 엑스퍼트 17'	2011-07-21	580,000	-	-	-	2020.2	교비
17	자전거	MIB/ 블랙켓 엑스퍼트 17'	2011-07-21	580,000	-	-	-	2020.2	교비
18	자전거	MIB/ 블랙켓 엑스퍼트 17'	2011-07-21	580,000	-	-	-	2020.2	교비
19	디지털피아노	삼익 nsp-170l	2015-08-25	765,000	-	-	U	2020.3	교비
20	디지털피아노	삼익 nsp-170l	2015-08-25	765,000	-	-	U	2020.3	교비
21	노트북	DHI2公耳图5759 X5450KR	2016-05-19	1,099,000	-	-	-	2020.12	기증
22	노트북	삼성 NT500R5L-L54S	2016-06-09	1,200,000	-	-	-	2020.12	기증
23	노트북	삼성 NT500R5L-L54S	2016-06-09	1,200,000	-	-	-	2020.12	기증
24	노트북	삼성 NT500R5L-L54S	2016-06-09	1,200,000	-	-	-	2020.12	기증
25	노트북	NT911S3L-M201S	2016-09-03	1,130,000	-	-	-	2020.2.29. (퇴직)	교비
26	노트북	NT911S3L-M201S	2016-09-03	1,130,000	-	-	-	2020.2.29. (퇴직)	교비
27	노트북	CN/B5180(811MOOVIMKR)	2017-10-31	838,000	-	-	-	2020.2	교비
28	노트북	삼성노트북 NI370E9LKOIG	2017-10-31	770,000	-	-	-	2019.02	교비
29	노트북	LG CN/15U560GR30KN	2017-10-31	770,000	-	-	-	2019.8.31. (퇴직)	교비
30	노트북	LG CN/15U560GR30KN	2017-10-31	770,000	-	-	-	2019.8.31. (퇴직)	교비
	합 계	-	-	23,964,500	-	-	-	-	-

^{*} 해당 골프채(나이키 남성용) 중 페이퍼플렉스 드라이버(1개), 포지드56 웨지(1개), 포지드52 웨지(1개) 이상 3개만 분실

^{**} 해당 골프채(나이키 여성용) 중 메소드 퍼터 1개만 분실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49	국고사업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대학 특성화사업(CK) 사업비 집행기준」사업비 집행	ㅇ경고(1명)
	및 관리, 「대학 혁신지원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ㅇ주의(3명)
	기준」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 공사	
	** 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	
	- 중부대학교는 201 9. 1. 10. 추정가격이 86,700 천원인	
	대학 특성화사업과 관련한 "헬스케어라운지존 구축	
	실내건축공사(계약금액 86,700천원, 공사기간 '19.1.14.~'19.2.13.)"	
	계약을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전자	
	조달시스템(G2B)이 아닌 서면으로 견적서를 받고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국고사업 전자조달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부터 공사 금의 계약 서덕	스템(G2B) 수의견적 미시행 현황"과 같이 2019.1. 더 2021.1.까지 위 "헬스케어라운지 존 구축 실내건축 나" 등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총 7건(계약 택 합계 459,204천원) 시설공사를 견적에 의한 수의 약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전자조달시스템(G2B)이 아닌 면으로 견적서를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으며,	
계호 진호 예신 전신 원(추 마트	아가, 중부대학교 BC는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택서」에 따라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에 속하는 '학생 아적 학습 환경 및 지원환경구축'사업을 진행하면서 난 배정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2020. 1. 28. "ICT 산실습실 화상강의시스템 구축공사(계약금액 24,252천 ★정가격24,251천원), 공사기간 '20.1.29.~'20.2.20.)"와 "PBL 스 트강의실 화상강의시스템 구축공사(계약금액 24,251천원 (가격24,251천원), 공사기간 '20.1.29.~'20.2.20.)"를 같은 날 ★와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국고사업 전자조달시스템(G2B) 수의견적 미시행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회 계	계약건명	추정 가격	견적일자 (계약일자)	계약 금액	계약대상자 (대표자명)	공사기간	타견적회사 (견적금액)	계약 담당자	관련 사업
1	국 고	헬스케어라운지 존 구축 실내건축공사	86,740 (예산)	2019.1.10. (2019.1.10.)	86,700	&&	2019.1.14. ~ 2019.2.13.	- (93,000) - (95,000)	-	CK 사업
2	국고	ICT 전산실습실 화상강의시스템 구축공사	26,976	2020.1.14. (2020.1.28.)	24,252	**	2020.1.29. ~ 2020.2.20.	- (29,700천원)	ВС	
3	국고	PBL스마트강의실 화상강의시스템 구축공사	26,976	2020.1.14. (2020.1.28.)	24,252	**	2020.1.29. ~ 2020.2.20.	- (29,700천원)	ВС	
4	국고	ICT전산실습실 및 PBL스마트강의실 수업환경 개선공사	67,900	2020.2.18. (2020.2.21.)	57,700	-	2020.2.21.	- (71,800천원) - (64,000천원)	ВС	대학 혁신
5	국 고	ICT 및 PBL 강의실 구축 실내건축공사	45,754	2020.2.19. (2020.2.26.)	42,300	-	2020.2.26. ~ 2020.2.27.	- (49,209천원)	-	지원 사업
6	국고	고양캠퍼스 휴게시설 (인농관/수경재) 구축 실내건축	157,500	2020.11.9. (2020.12.9.)	150,000	&&	2020.12.9. ~ 2021.1.26.	- (165,000천원)	-	
7	국고	동물사육시설 구축공사	80,250	2020.12.3 (2021.1.4.)	74,000	-	2020.1.4. ~ 2021.2.10.	- (81,000천원) - (79,500천원)	ВС	
	합 계		-	459,204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0.5.1.부터 2021.6.30.까지 전문공사는 2억원까지 수의계약 가능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50	시설공사 계약체결 부당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① 관련>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ㅇ경고(3명)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ㅇ주의(1명)
	금액(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	<② 관련>
	구매 및 용역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 중징계(1명)
	계약의 체결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계약의 성질 또는	○ 통보(문책 3명)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일반경쟁입찰 대상 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①	
	- 중부대학교는 2019. 4. 25. 예정가격이 119,203천원으로	
	일반경쟁입찰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고양캠퍼스 사면	
	보호공 시설공사(계약금액 97,900천원, 공사기간 '19.4.29.~'19.5.28.)"를	
	⊙⊙과 수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붙임】"일반경쟁	
	입찰 대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중부대학교는	
	2019. 4.부터 2021. 1.까지 일반경쟁입찰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위 '고양캠퍼스 사면보호공 시설공사' 등 2건의	
	시설공사(계약금액 합계 317,900천원)를 ⊙⊙ 등 2개 업체와	
	수의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일반경쟁입찰 대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계약명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예정가격)	계약상대자 (대표자)	타견적업체 (견적금액)	계약담당자 (결재권자)
1	고양캠퍼스 사면보호공 시설공사	2019.4.25.	2019.4.29. ~ 2019.5.28.	97,900 (119,203)	⊙⊙	- (125,950) / - (133,760)	BC (-)
2	(혁신)고양캠퍼스 세종관(도서관)실내건축 공사 구축	2021.1.26.	2021.1.26.	220,000 (227,300)	-	- (234,600)	- (-, -)
	합 계	-	-	317,900	-	-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51	제한경쟁입찰 예정가격 사전 누설 부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경징계(1명)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 통보(문책 1명)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부대학교 물품구매 및 검수·	<별도조치>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제33조에 따라 준용하도록	ㅇ 수사의뢰
	되어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및 「중부대학교 물품구매 및 검수·시설	
	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경쟁 입찰에 부칠 사항은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개찰 시까지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중부대학교 ◇차*는 2017.7.7. 예정가격이 10,750,000천원인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공사(토목,	
	건축 외)"를 제한경쟁으로 입찰 공고하였으나 입찰자격이	
	주어지는 현장설명회에 ■■ 1곳만 참여하여 유찰되자,	
	2차로 2017.7.18. 제한경쟁입찰 공고한 후 2017.7.	
	미상일 최초 입찰공고에 참여한 위 ■■ 공사관계자를	
	만나** 미리 설계금액 대비 적정 입찰가격을 산정***	
	할 수 있도록 설계금액이 제시된 설계내역서를 제공	
	하였고, 그 결과 2017. 8. 11. 개찰일에 위 ■■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2017.9.7. ■■과 공사계약(계약금액	
	10,373,550천원, 공사기간 '17.9.20.~'18.11.30.)을 체결한 사실이	
	이 이 从 ㅁ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안)
	* 중부대학교는 고양캠퍼스 조성과 관련하여 신규 건설공사 추진	
	및 관리업무를 ◇처에서 주관('15.3.9.~'17.11.15.)	
	** (학교관계자) BD	
	*** 최저가낙찰제 방식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는 설계도서 중 공	
	내역서에 입찰금액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2차 입찰 참가업체(2개업체) : ■■,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52	연구실 활동종사자 안전교육·훈련 운영 부적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 기관경고
		o 개선 -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 하고, 향후 연구 활동 종사자에 속 하는 교직원에 대해 규정에서 정한 시간의 안전교육·훈련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일정	
	시간과 내용의 정기 및 신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매년 정기(연간 3~12시간) 및 신규(채용 후 6개월 이내 2~8시간)	
	- 중부대학교는 2007. 4. 13. 「중부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이하 '관련규정'이라함)」제3조 제1호에 '연구활동	
	종사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이라고 규정한	
	이후 2021. 4. 감사일 현재까지 위 관련규정 제3조를	
	개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2018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훈련 대상자인 교원 25명에	
	대해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붙임】 "연도별	
	연구 활동 종사자(교직원) 안전교육·훈련 대상자 교육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위 연구	
	활동종사자 안전교육·훈련 대상자인 교직원 총 68명(연인원)의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붙임】 연도별 연구활동종사자(교원) 안전교육·훈련 대상자 교육 미실시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 대상자 수	교원* 수	연구원, 대학(원)생 수	교육 미실시 인원
	(C=A+B)	(A)	(B)	
2018	1,605	25	1,580	25
2019	1,744	23	1,721	23
2020	1,700	20	1,680	20
합계	5,049	68	4,981	68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원